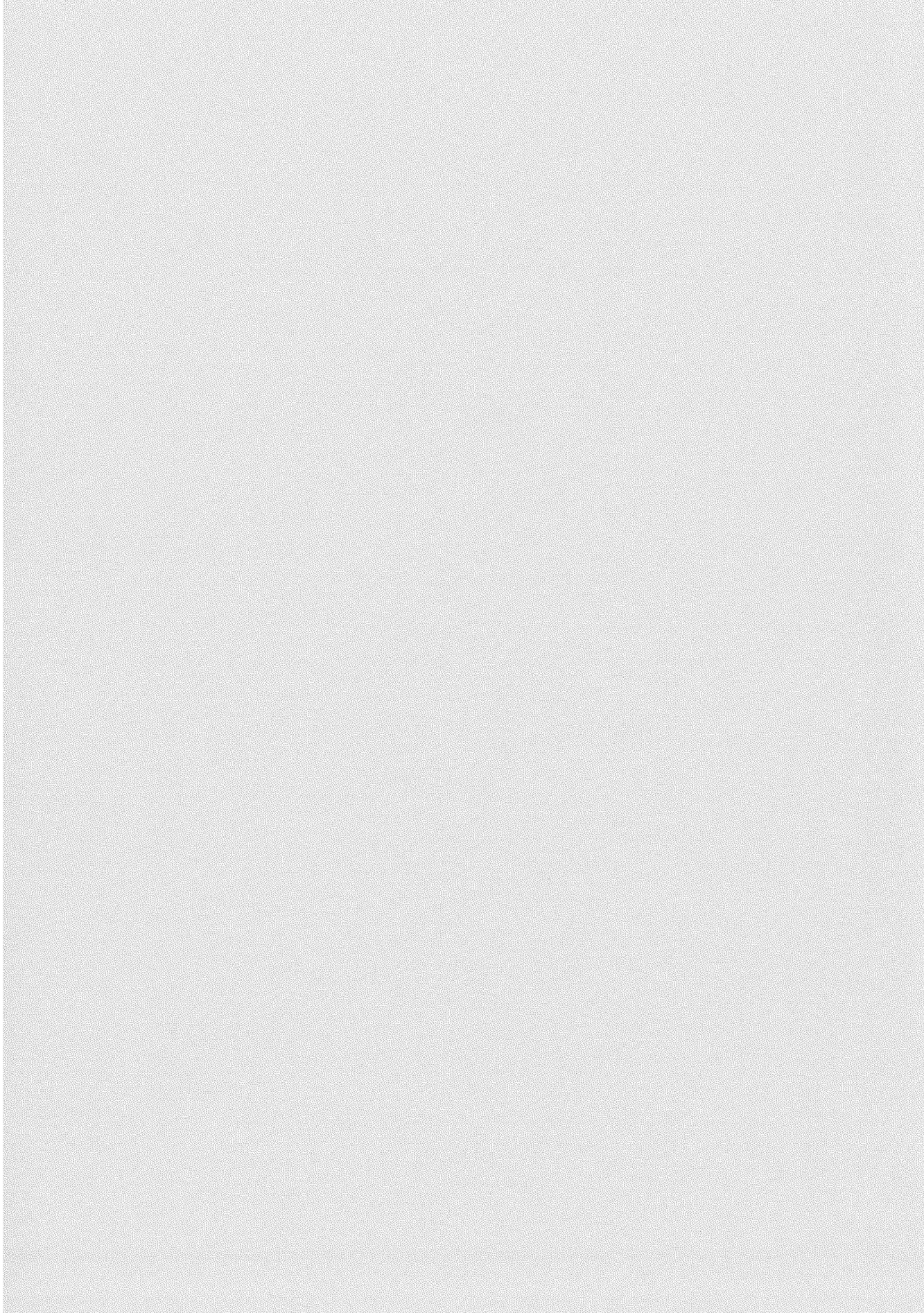


第13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 |
|---|----|
| I. 개회식 | 3 |
| II.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
| III.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3 |
| IV. 부 록 | |
| 1. 의사일정안 | 21 |
|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3 |
| 3. 학교설립계획안 | 45 |
|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 57 |
| 5.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77 |
| 6.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79 |
| 7.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83 |
| V. 별책부록 | |
|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
|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별책 2) | |
| ▶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10시 50분

開會式順(第13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 :의사담당 김왕년)

(10시 50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10시 52분 폐식)

지금부터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최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10시 52분

議事日程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3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학교설립계획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5.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7.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3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6.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재의)
8.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재의)

(10시 52분 개의)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에서 출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청북도교

[제131회-제1차 본회의]

교육국장께서는 정년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하시고, 시설과장님은 교육부 회의의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8월 2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 제2001-8호로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동일자로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학교설립계획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7월 23일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규칙 제13호로 공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3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55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56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본 제안설명은 교육국장이 하여야 합니다 만 이주원 교육국장이 8월말로 정년퇴임을 하는 관계로 부득이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의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제로 도입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제명 및 개인과외교습 관련사항이 변경되어 2001년 4월 7일 공포되고, 동법률시행령이 2001년 7월 7일 공포되어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둘째,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중 관련법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개인과외교습에 따른 미신고자의 교습중지 명령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셋째, 학원의 시설규모 분야 중 입시·검정란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변경하고, 동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에서 초등학교도 수강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충학습과정을 신설하여 시설규모를 강의실 6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

[제131회-제1차 본회의]

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중 자동차운전 부분을 삭제하고,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중 자동차운전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관리국 소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을 집행청 요청에 의하여 교체 배부해 드렸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은 교체된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는 앞으로 의안제출 시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설립계획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6.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학교설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관리국 소관의 학교설립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현재 학급당 40명 내외로 편성되었던 학생수를,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35명 이하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과대학교 분리를 통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과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택지개발지역 유입학생의 적시 수용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

하여 일반계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청주시 분평동 1362번지에 36학급 규모의 가칭 분평중학교를, 가경동 219번지에 36학급 규모의 가칭 죽림중학교를, 가경4지구 택지개발지역 B-1, B-2블럭에 30학급 규모의 가칭 가경고등학교를, 용암2지구 택지개발지역 2-2블럭에 30학급 규모의 가칭 용암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충주시 칠금동 822번지에 27학급 규모의 가칭 호암중학교를, 제천시 장락동 693-5번지 외 4필지 내에 24학급 규모의 제천북중학교를 설립하는 등 모두 6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6개의 신설 소요예산은, 총 696억 8,699만 5,000원이 필요한데 이중 가칭 분평중학교부지매입비 50%는 이미 예산에 편성하였기에 2001년도 제2회 추경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설계비 전액과, 가칭 죽림중학교와 가칭 호암중학교의 부지매입비중 계약금 상당액의 10%와 설계비 전액,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제천북중학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전액 등 총 21억 9,346만원을 계상하고, 잔여 소요액은 2002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 총 256억 6,797만원은 금회 추경에 전액 계상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가 충북 도로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위원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학교설립계획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주고등학교 외 3개 교에 교실 2,970㎡, 계단실 630㎡, 화장실 300㎡를 각각 증축하고, 서원중 외 1개교에 다목적강당 2,040㎡를 증축코자 합니다.

또한,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 재원을 확보하고자 단양 어상천초금당분교와 단양초노동분교를 처분코자 합니다.

▶ 참 조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OECD 국가 수

[제131회-제1차 본회의]

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고등학교의 학급증설과 중·고등학교의 신설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설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845억 6,667만원에서 411억 897만원이 증액된 9,256억 7,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69억 7,803만원,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13억 6,709만원, 지방교육채 327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인 자영농과생 급식비 5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교육활동비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에 13억 1,483만원, 중학교 신설 및 급식소 신축에 33억 5,997만원, 고등학교 학급증설 및 신설, 실업계고등학교 지원,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에 386억 8,035만원,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의 사업비 및 시설비로 1억 5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23억 5,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가칭 가경고등학교 및 용암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에 256억 6,797만원, 청주지역에

가칭 분평중학교와 죽림중학교, 충주지역에 호암중학교, 제천지역에 제천북중학교, 총 4개 중학교를 신설하고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에 21억 9,346만원을 계상하였고, 2002학년도까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고자 89개 교실을 증축하는데 71억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양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및 특별교실 증축비와 충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11억 2,1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실시를 위한 대소초등학교 및 서원중학교의 다목적교실 신축비 16억 8,900만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원학원 내 충북여자고등학교 교실개축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확충 및 멀티미디어 확충 등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실업계교육지원비로 18억 1,443만원, 중학교 급식 확대를 위하여 음성여자중학교 급식소 신축비로 1억 9,136만원, 민간참여 정보화 우수학교 지원 등 교육활동비로 2억 476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연수 및 교육관련 정보화 연수비에 1억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 참 조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5)
(끝에 실음)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책 2)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실
명자료(별책 3)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
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식정보
화 사회가 요구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
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특단의 정부시
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관
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서 이기착으로 인하여 일부 재산의 추정가
격이 잘못된 안을 제출하였다가 대체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7.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0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소

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
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은 각각 의장을 제외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
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소위원
회구성의건도 역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학원의설
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
사소위원회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
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송진
하 부의장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소위원회 활동
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제131회-제1차 본회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별첨 2)
- ▶ 학교설립계획안(별첨 3)
-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별첨 4)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5)

※ 별 책 부 록

-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9월 1일 (토요일) 10시 01분

議事日程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학교설립계획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청 간부 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직원 단상 앞으로 나옴)

● 교육감 김영세

금번 9월 1일자 인사에 따라서 발령된 본청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임 조봉래 교육국장은 공주사범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67년에 충주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교육계 투신한 이래, 진천고등학교 교장, 청주금천고등학교 교장을 거쳐서 금번 9월 1일자 교육국장으로 전직 발령되었

습니다.

(교육감, 교육국장에게 “인사하세요.” 하고 말할)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장학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주사범학교와 청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충북교육계에 오래 활동하다가 보은교육청 교육과장, 음성고등학교 교장, 음성교육청 교육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중등교육과장으로 전직 발령되었습니다.

(교육감·간부직인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조일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눔)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일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조일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8월 2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중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 중 과외교습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00년 4월 27일 판결에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제로 도입하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개인과외교습과 관련된 사항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또 한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개정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현장 확인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집행청의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대민 내지는 사학학원 연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학원 관계관과 협조를 해서 그간에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 사학담당의 담당 직원에 대한 격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훌륭한 성과를 올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행청의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리 교육환경 개선, 특히 사학도 이제는 공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발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교설립계획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10시 10분)

● 의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설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황을 살펴보신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충원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충원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충원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8월 2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845억 6,666만 7,000원보다 411억 896만 7,000원이 증액된 9,256억 7,5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4.6%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69억 7,802만 8,000원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3억 6,708만 8,000원, 그리고 지방교육채 327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1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433억 5,514만 7,000원이고, 교육행정에 1억 53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3억 5,152만원이 결과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역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금과 지방교육채 등의 재원으로 OECD 수준에 접근하는 교육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하기 위해서 부족교실 증축과 신설학교 시설사업비 및 부지매입비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기채를 함에 있어서 자금상황과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서 차입시기와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여 동시에 차입함에 따른 재정부담을 다소나마 덜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차입이자 또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가급적이면 여러 금융기관의 대여이율과 조건을 심도있게 비교·검토하여 차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2002학년도 3월 신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공사소음으로 인한 학교수업 방해의 최소화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 등 건축공사 감독의 철저는 물론이고 부족교사 충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

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제131회-제2차 본회의]

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폐회 후에는 개원 3주년 기념식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시설과장 오형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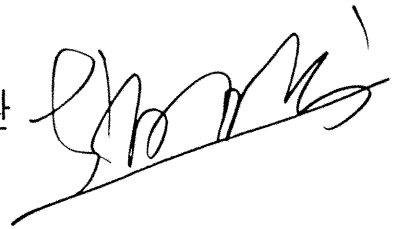
※ 부 록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6)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7)

제1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감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10. .

위원장 조 일 환



議 事 日 程 (案)

第131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1. 8. 29. ~ 9. 1.(4 日間)

| 日 時 | 附 議 案 件 | 備 考 |
|----------------------|--|---------------------|
| 8月 29日(水) (10:30) |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input type="checkbox"/> [第1次 本會議] 1. 제13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1. 8. 29. ~ 9. 1.(4 일간)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학교설립계획안(제안설명)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5.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7.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 · 결산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教育委員 協議會 | |
| 8月 30日 ~ 8月 31日 |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 · 결산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議案關聯 現場訪問 | 本會議 休會 |
| 9月 1日(土) (10:00) | <input type="checkbox"/> [第2次 本會議]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학교설립계획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input type="checkbox"/> 閉 會 | 개원3주년기념식 (11:30) |

| | |
|-----------|------------------------|
| 의안번호 | 제/기-/호 |
| 의결 년월일 | 2001. 9. 1. (제/기/회)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2001. 8. 21.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31 - 1 |
|----------|---------|

제출년월일 : 2001. 4. 2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 부서 : 평생교육체육과

□ 개정사유

-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제로 도입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제명(題名) 및 개인과외교습 관련사항이 변경·개정되어 2001년 4월 7일 공포되고,
-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함 (안 조례 제명).
- 목적중 관련법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함 (안 제1조).
- 개인과외교습에 따른 교습중지명령 방법 등을 신설 (안 제9조의2).
- 학원의 시설규모의 분야중 입시·검정란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하고, 동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에 초등학교도 수강이 가능하게 하며, 동 교습과정에 보충학습란을 신설하고, 보충학습의 시설규모를 강의실 연면적 60㎡이상으로 함 (안 별표 1).
-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중 자동차 운전 부분을 삭제함 (안 별표 2).
-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중 자동차운전 부분을 삭제함(안 별표 3).

개정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2001.4.7.법률제6463호 : 2001.7. 8. 시행)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제6392호 : 2001. 6. 30. 시행)

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등)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중 입시·검정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분 야 | 계 열 | 교습과정 | 시 설 규 모 |
|-----------------|------|------|--|
|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210 m ² 이상, 기타지역 150 m ² 이상 |
| | | 입시단과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90 m ² 이상, 기타지역 60 m ² 이상 |
| | | 보충학습 | 강의실 연면적 60 m ² 이상 |
| | | 검정고시 | 강의실 연면적 90 m ² 이상 |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산업기반기술계열, 교습과정중 “2. 자동차(2-4,자동차운전)”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직업기술분야, 산업기반기술계열, 교습과정의 2. 자동차중 “자동차운전”부분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설></p> <p><신설></p> |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u>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u>……………</p> <p>……………</p> <p>……………</p> <p>……………</p> <p>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등)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

| 현행 | | | |
|-----------|----------|--|--|
| [별표 1] | | | |
| 학원의 시설 규모 | | | |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
| 직업 기술 | | (생) | 략) |
| 국제 실무 | | (생) | 략) |
| 인문· 사회 | | (생) | 략) |
| 경영 실무 | | (생) | 략) |
| 예능 | | (생) | 략) |
| 입시· 검정 | 보통 교과 | 중학교 및 고등 학교의 교육과 정에 속하는 교 과로서 예·체 능 및 실업계고 등학교의 전문 교과 제외 | 입시 종합 : 시지역 210m' 이상, 기타지역 150m'이상 |
| | | | 입시 단과 : 시지역 90m' 이상, 기타지역 60m' 이상 |
| | | | <신설> <신설> |
| | | | 검정 고시 90m'이상 |
| 독서실 | | (생) | 략) |
| [비고] | | (생) | 략) |

| 개정안 | | | |
|---------------------|----------|-------|--|
| [별표 1] | | | |
| 학원의 시설 규모 | | | |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
| 직업 기술 | | (현행과) | 같음) |
| 국제 실무 | | (현행과) | 같음) |
| 인문· 사회 | | (현행과) | 같음) |
| 경영 실무 | | (현행과) | 같음) |
| 예능 | | (현행과) | 같음) |
| 입시·검 정 및 보충학습 | 보통 교과 | 입시종합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210m' 이상, 기타지역 150m'이상 |
| | | 입시단과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90m' 이상, 기타지역 60m' 이상 |
| | | 보충학습 | 강의실 연면적 60m'이상 |
| | | 검정고시 | 강의실 연면적 90m'이상 |
| 독서실 | | (현행과) | 같음) |
| [비고] | | (현행과) | 같음) |

| 현행 | | 개정안 | |
|---|--|---|------------|
| <p>[별표 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p> | | <p>[별표 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p> | |
| 교습과정 | 시설·설비 및 교구 | 교습과정 | 시설·설비 및 교구 |
| 1.~2-3. | (생략) | 1.~2-3. | (현행과 같음) |
| 2.자동차 (2-4, 자동차운전) | 가. 시설 (1) 강의실 66㎡ 이상 (2) 정비장 66㎡ 이상 (3) 주차시설 75㎡ 이상 (4) 기능교육장은 6,600㎡ 이상으로 하되, 제1종 대형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 이상,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 이상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2층으로 기능교육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상하연결 차도의 넓이가 7m 이 이상이어야함) 나. 설비 및 교구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5)에서 규정한 기능교습 코스 각 1조 이상 (2) 기능교육장 일시수용인원 1인에 1대 기준으로 기능교육장 면적 300㎡당 차량 1대 이내 (단, 차량은 생산공장에서 출고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작증명서가 구비된 차량이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이하 생략) | <삭제> <삭제> <삭제> | |
| | (이하 생략) | | (현행과 같음) |

| 현행 | | | 개정안 | | |
|--|---|--|---|--------------|--------------|
| <p>[별표 3]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p> | | | <p>[별표 3]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p> | | |
| 교습과정 | 일시수용 능력인원 | 비고 | 교습과정 | 일시수용 능력인원 | 비고 |
| 1.기 계 | (생 | 략) | 1.기 계 | (현행 | 과 같음) |
| 2.자동차 | | | 2.자동차 | | |
| · 자동차 정비 | 40 | 실습실60㎡기준 | · 자동차 정비 | 40 | 실습실60㎡기준 |
| · 중기운전 | 30 | 실습실990㎡기준 | · 중기운전 | 30 | 실습실990㎡기준 |
| · 중기정비 | 30 | 실습실45㎡기준 | · 중기정비 | 30 | 실습실45㎡기준 |
| · 자동차 운전 | 기능교 육장면 적및기 능코스 규모에 따라산 정 | 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반 : 당해 기능교육장 부지면적 300㎡ 당 1인이내 나. 대형 및 특수반 : 당해 기능코스 1조 당 2인이내 다. 제2종 소형 및 원동기 장치 자전 거 반: 당해 기능 교육장 부지면적 50㎡당 1인 | <삭제> | <삭제> | <삭제> |
| (이 | 하 | 생 략) | (현 | 행 | 과 같 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01.4.7 법률 제6463호)

| 연번 | 주 요 개 정 내 용 | 비 고 |
|----|--|-----|
| 1 | ○ 법률의 명칭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함(법률명). | |
| 2 | ○ 자동차운전관련학원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2001.6.30 시행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 | |
| 3 |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 조항 신설(제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조항 신설(제4조제2항). ○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감독 근거조항 신설(제16조제3항). ○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계속하는 경우 교육감은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벌금형을 받고도 신고를 하니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3호). ○ 현직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2조제2항). | |
| 4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외교습 금지조항을 삭제하는등 실효된 조문을 정리함(제3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 |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 연번 |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
| 1 | ○ 교습소에서 보통교과의 교습인 국어,영어,수학등 1과목만 신고가능(제3조제2항 삭제). | |
| 2 | ○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유해업소로부터 보호범위에 초등학생 보통교과 교습학원 포함(제4조). | |
| 3 | ○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개정 (제7조의2제1항). - 학원의 고유기능이 정규학교의 보충학습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분야관중 “입시·검정”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변경하고, - 교습과정에서 초등학생의 보통교과 교습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 |
| 4 | ○ 학원의 단위시설중 강의실,열람실,실험·실습실에 대한 칸막이 최소규정인 15㎡(음악 3㎡)를 삭제하여 강의실 규제완화(제9조). | |
| 5 |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내용 및 변경신고 내용 신설(제16조의2). | |
| 6 |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 및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제20조). | |

관계법령발췌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법률 제6463호 '01.4.7)

第1條 (目的) 이 법은 學院의 設立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學院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學院”이라 함은 私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學習者에게 30日이상의 敎習課程(敎習課程의 반복으로 敎習日數가 30日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知識·技術(技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藝能을 敎習하거나, 30日이상 學習場所로 제공되는 施設로서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施設을 말한다.
 - 가. 教育法 기타 法令에 의한 學校
 - 나. 圖書館 및 博物館
 - 다. 事業場등의 施設로서 所屬職員의 研修를 위한 施設
 -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삭제>
 - 바.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
 -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2001.1.26. 도로교통법개정법률 제6392호, 2001.6.30부터 시행)
2. “敎習所”라 함은 제4호의 規定에 의한 課外敎習을 하는 施設로서 學院이 아닌 施設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課外敎習”이라 함은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의 學生이나 學校入學 또는 學力認定에 관한 檢定을 위한 受驗準備生에게 知識·技術·藝能을 敎習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第1號 各目的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서 그 設置目的에 따라 행하는 敎習行爲
 - 나. 동일 戶籍내의 親族이 하는 敎習行爲

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活動에 속하는 敎習行爲

5. “學習者”라 함은 學院 또는 敎習所에서 學習을 받거나 30日以上 學習場所로 제공되는 施設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의교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第4條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學院을 設立·운영하는 者(이하 “學院設立·運營者”라 한다)는 自律과 創意로 學院을 운영하며 學習者에 대한 편의제공·負擔輕減 및 教育機會의 均衡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擔當者로서의 責務를 다하여야 한다.

②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의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均衡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第8條 (施設基準) ①學院에는 敎習課程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라 敎習 및 學習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른 敎習過程別·地域別 施設規模 및 設備基準을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の 條例는 施設規模의 下限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 (개인과의교습자의 신고등) ①개인과의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教育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大統領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高等教育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의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教育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개인과의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개인과의교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教育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감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개인과의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教育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6條 (指導・監督등)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의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學院設立·運營者 및 敎習者에 대하여 施設·設備, 受講料등, 敎習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統計資料를 보고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出入하여 그 施設·設備, 帳簿 기타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施設·設備의 개선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의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19條 (學院등에 대한 措置) ①교육감은 第6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學院 또는 敎習所를 設立·運營하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院의 登錄 抹消 또는 敎習所 廢止의 처분을 받거나 敎習의 정지처분을 받은 學院 設立·運營者 또는 敎習者가 계속하여 敎習하거나 學習場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를 閉鎖하거나 敎習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의 看板 기타 標識物을 제거하거나 學習者의 出入을 제한하기 위한 施設物의 設置

2.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가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施設이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을 받은 施設임을 알리는 揭示文의 附着

②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행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22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삭 제>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學院을 設立·運營한 者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者は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敎習所를 設立·운영한 者

2. 第19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看板 기타 標識物의 제거 또는 設置物의 設置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揭示文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者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第23條 (過怠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者は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0條 또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2項에 의한 講師의 年齡·學歷·專攻科目 및 經歷등에 관한 人的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者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講料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同 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講料 등을 허위로 게시한 者

6.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7.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受講料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監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該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教育監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教育監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該 사실을 通報하여야 하며, 該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依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인과의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인과의교습자(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을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② <삭 제>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1.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 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제7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예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단위시설의 기준) ①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

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삭 제>

5.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6.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 난방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 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이상일 것

7.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것

8. (삭제)

9. (삭제)

②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교구· 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개인과의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의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의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고자의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②개인과의교습자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 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 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의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의 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의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 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 ②<삭제> (도로교통법시행령 부칙)
- ③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 관련) | | |
|--|--------|---|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피아노조율, 사진 |
| | 정보처리기술 |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 문화 관광 |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
| 국제화 | 외국어 |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 경영 실무 | 경영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
| | 사무 관리 |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
| 예능 | 예능 |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에 |
| 입시·검정·보충학습 | 보통 교과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 독서실 | | 독서실 |
| 비고 :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 | |

□도로교통법 (2001.1.26. 법률 제6392호 2001.6.30 시행)

제70조의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3 (조건부 등록) ①지방경찰청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었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4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5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71조의15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9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6 (휴·폐원 신고)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휴원하는 경우에는 휴원 또는 폐원일부터 7

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7 (교육과정 등)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8 (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는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9 (수강료 등)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1·6·30]]

제70조의10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11 (지도·감독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시행일 2001·6·30]

| | |
|-------------|------------------------|
| 의안번호 | 제 131-2호 |
| 의결 년 월 일 | 2001. 9. 1. (제131회) |

학교설립계획(안)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2001. 8. 21. |

학교설립계획(안)

| | |
|----------|-------|
| 의안 번호 | 131-2 |
|----------|-------|

제출년월일 : 2001. 8. 2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I. 중 학 교

설립목적

-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 과대학교 분리를 통한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 지역 | 학 교 명 (가 칭) | 위 치 | 규모 | 개교예정 (년월일) |
|----|----------------|--|----|---------------|
| 청주 | 분 평 중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62 | 36 | 2003. 3. 1. |
| | 죽 립 중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19 | 36 | " |
| 충주 | 호 암 중 | 충주시 칠금동 822 | 27 | " |
| 제천 | 제천북중 | 제천시 장락동 693-5, 683-14, 687, 688-13, 산 50-1 | 24 | " |

- 학생 수용계획

| 학 교 명 (가 칭) | 수 용 계 획 | | 소 요 교 실 수 | | | | 비 고 |
|----------------|------------|------------|-----------|-----|------|-------|-----|
| | 학년당 학급수 | 완 성 학급수 | 교과실 | 관리실 | 기 타 | 계 | |
| 분 평 중 | 12 | 36 | 59 | 7.5 | 24.5 | 91 | |
| 죽 립 중 | 12 | 36 | 59 | 7.5 | 24.5 | 91 | |
| 호 암 중 | 9 | 27 | 47 | 7.5 | 24.5 | 79 | |
| 제천북중 | 8 | 24 | 42.5 | 7.5 | 23.3 | 73.3 | |
| 계 | 41 | 123 | 207.5 | 30 | 96.8 | 334.3 |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학교 급별 | 지 역 교육청 | 학 교 명 (가 칭) | 부 지 | | 건물면적 (㎡) | 시설비 예정액 | 계 |
|----------|------------|----------------|----------|------------|-------------|------------|------------|
| | | | 면적(㎡) | 금액 | | | |
| 중 | 청주 | 분 명 중 | 12,202.6 | 4,427,715 | 8,839 | 8,188,925 | 12,616,640 |
| | " | 죽 림 중 | 10,580.0 | 5,076,284 | 8,839 | 8,165,115 | 13,241,399 |
| | 충주 | 호 암 중 | 11,618.0 | 3,043,986 | 8,114.5 | 7,453,473 | 10,497,459 |
| | 제천 | 제천북중 | 10,965.0 | 530,000 | 7,161 | 7,133,529 | 7,663,529 |
| 계 | | 4개교 | 45,365.6 | 13,077,985 | 32,953.5 | 30,941,042 | 44,019,027 |

□ 소요재원 확보계획 : 교부금 및 자체재원으로 충당

- 설계용역비 : 2001. 제2회 추경에 반영
- 부지매입비 일부 : "
- 부지매입비 잔여분 및 시설비 : 2002 본예산에 반영

II. 고 등 학 교

□ 설립목적

-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일반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충
- 과대학교 분리를 통한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

□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 지역 | 학 교 명 (가 칭) | 위 치 | 규모 | 개교예정 (년월일) |
|----|----------------|---|----|---------------|
| 청주 | 가 경 고 | 청주시 흥덕구 가경(4)택지개발지구내 B-1, B-2브릭 | 30 | 2003. 3. 1. |
| | 용 암 고 | 청주시 상당구 용암(2)택지개발지구내 2-2브릭(예정번호 용담동 364) | 30 | " |

○ 학생 수용계획

| 학교명 (가칭) | 수용계획 | | 소요교실수 | | | | 비고 |
|-------------|------------|-----------|-------|-----|------|-----|----|
| | 학년당 학급수 | 완성 학급수 | 교과실 | 관리실 | 기타 | 계 | |
| 가경고 | 10 | 30 | 64 | 8.5 | 27.5 | 100 | |
| 용암고 | 10 | 30 | 64 | 8.5 | 27.5 | 100 | |
| 계 | 20 | 60 | 128 | 17 | 55 | 200 |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학교 급별 | 지역 교육청 | 학교명 (가칭) | 부지 | | 건물면적 (㎡) | 시설비 예정액 | 계 |
|----------|-----------|-------------|----------|------------|-------------|------------|------------|
| | | | 면적(㎡) | 금액 | | | |
| 고 | 청주 | 가경고 | 11,614.0 | 5,574,720 | 8,509 | 7,462,509 | 13,037,229 |
| | 청주 | 용암고 | 11,614.0 | 5,168,230 | 8,509 | 7,462,509 | 12,630,739 |
| 계 | | 2개교 | 23,228.0 | 10,742,950 | 17,018 | 14,925,018 | 25,667,968 |

□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자체재원(지방채)으로 우선 충당

○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시설비 : 전액 2001. 제2회 추경에 반영

Ⅲ. 참고사항 : 붙임

- 연도별 투자계획
- 신설학교 위치도
- 근거법령 발췌서

연도별 투자계획

- 중 학교

단위 : 천원

| 학교명 (가칭) | 소요액 | 연도별 투자계획 | | | | 비고 |
|-------------|------------|-----------|-----------|------------|------------|----|
| | | 기투자 | 2001 | 2002 | 계 | |
| 분평중 | 12,616,640 | 2,221,086 | 234,214 | 10,161,340 | 12,616,640 | |
| 죽림중 | 13,241,399 | | 727,362 | 12,514,037 | 13,241,399 | |
| 호암중 | 10,497,459 | | 507,320 | 9,990,139 | 10,497,459 | |
| 제천북중 | 7,663,529 | | 724,565 | 6,938,964 | 7,663,529 | |
| 계 | 44,019,027 | 2,221,086 | 2,193,461 | 39,604,480 | 44,019,027 | |

- 고등학교

단위 : 천원

| 학교명 (가칭) | 소요액 | 연도별 투자계획 | | | 계 | 비고 |
|-------------|------------|------------|------|------|------------|----|
| | | 2001 | 2002 | 2003 | | |
| 가경고 | 13,037,229 | 13,037,229 | | | 13,037,229 | |
| 용암고 | 12,630,739 | 12,630,739 | | | 12,630,739 | |
| 계 | | 25,667,968 | | | 25,667,968 | |

근거법령 발췌서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등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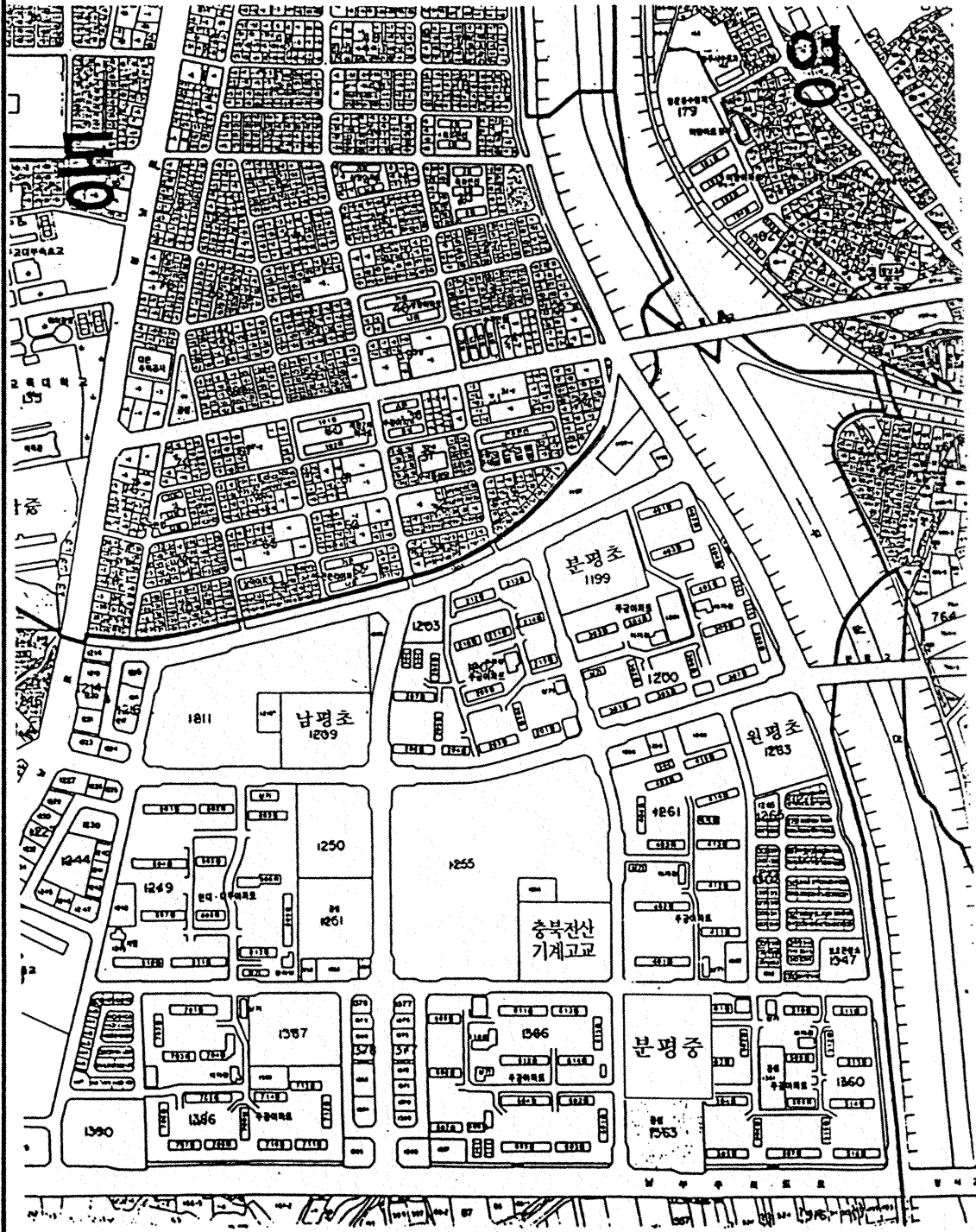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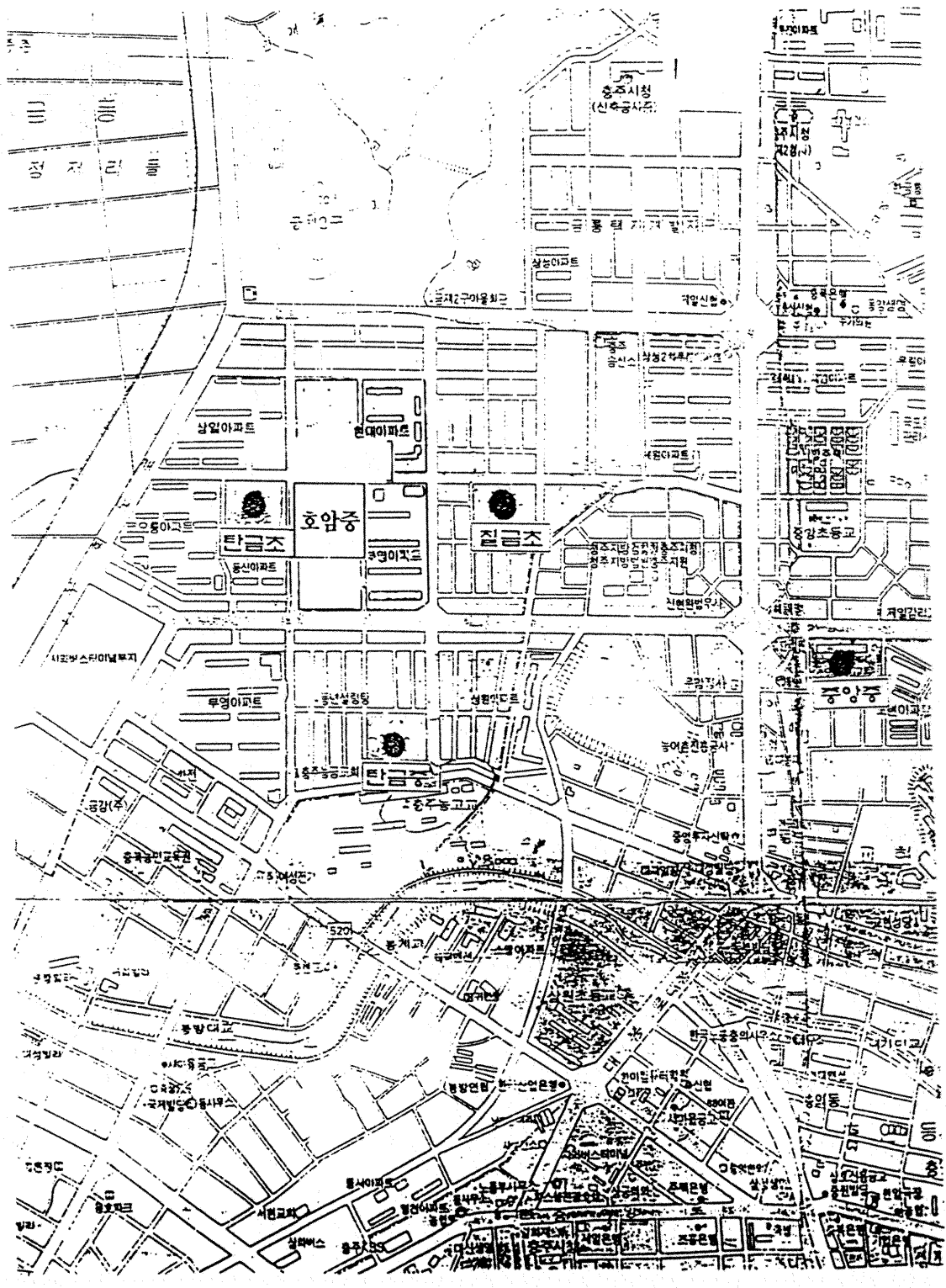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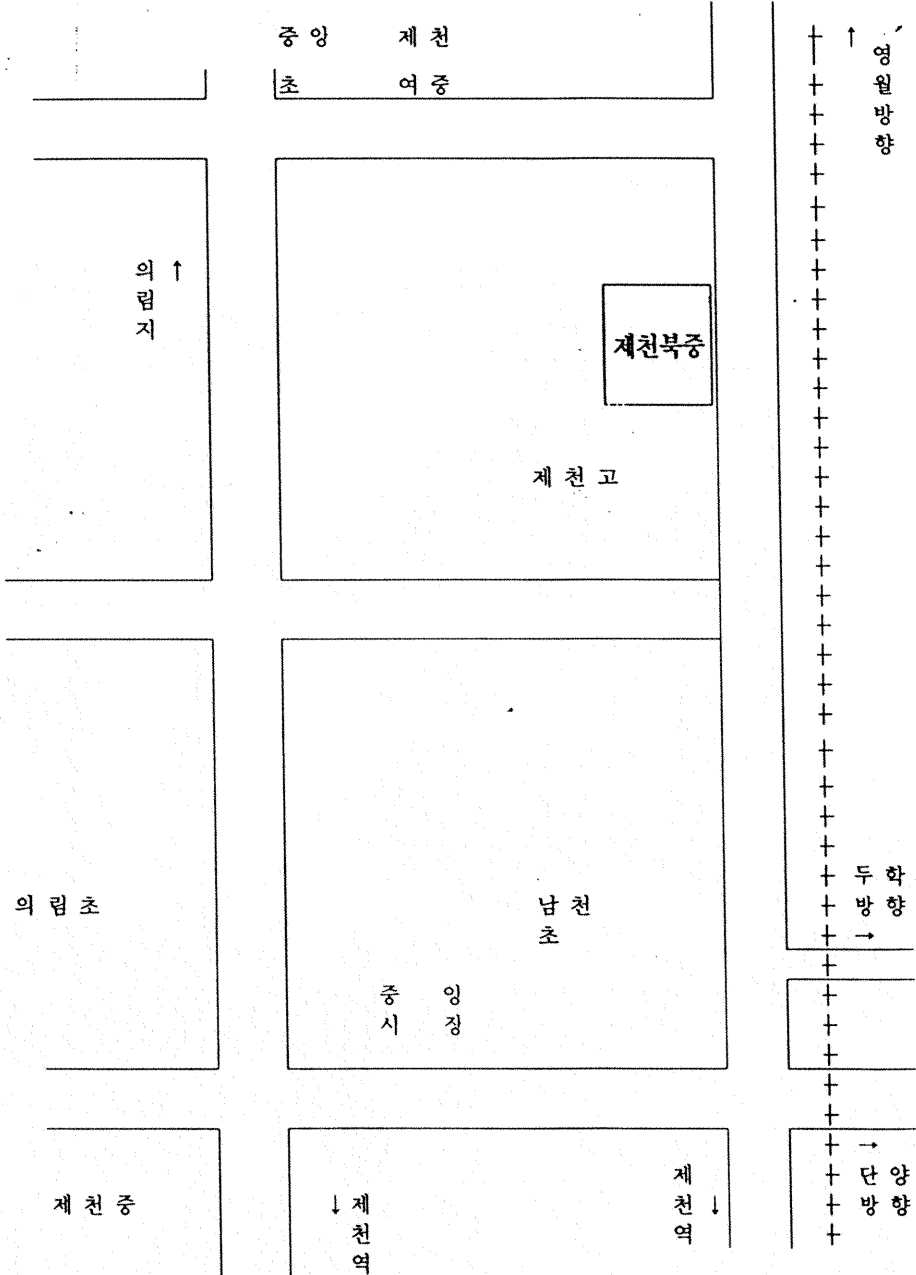
신설 예정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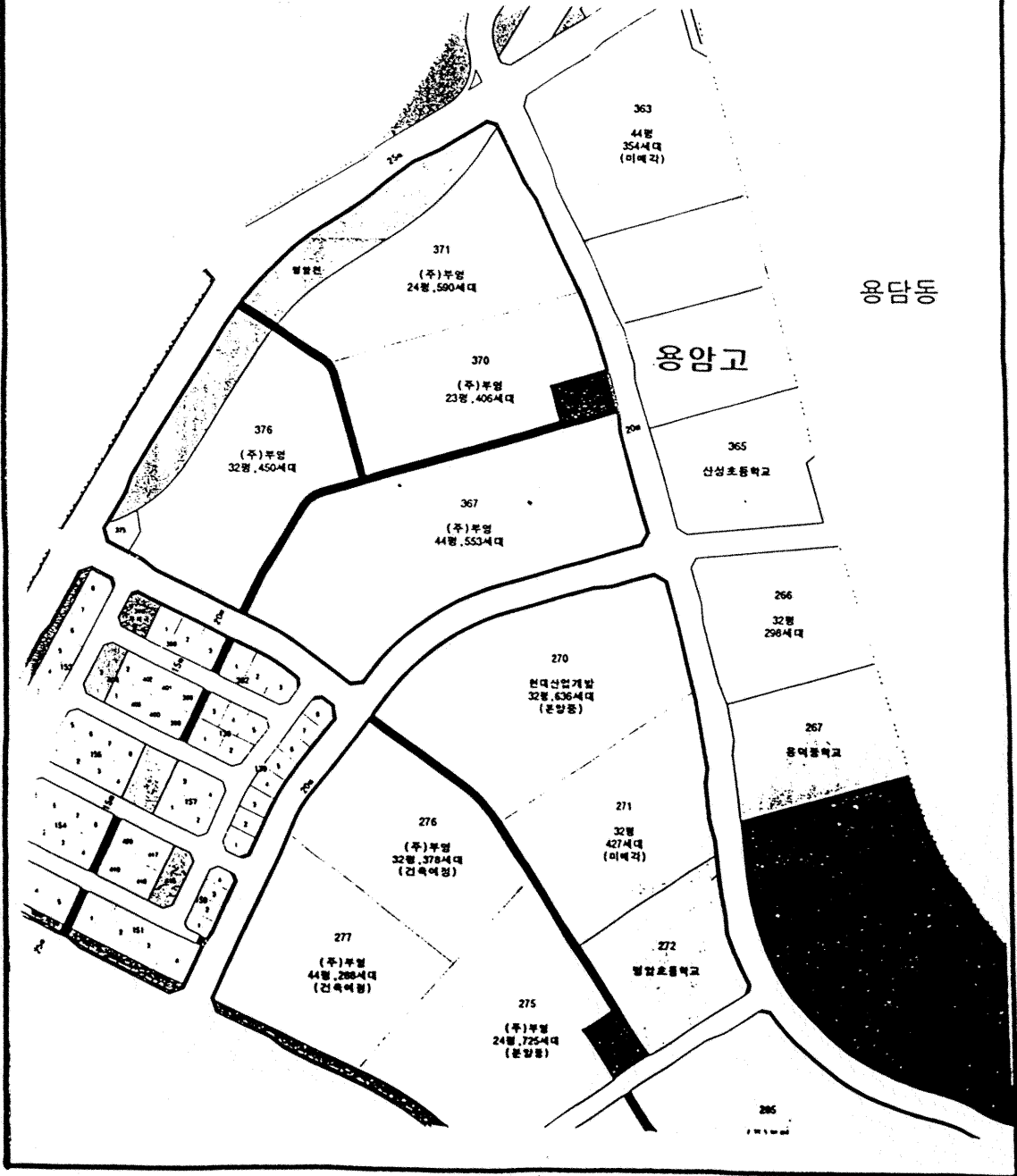
신설 예정교 위치도



신설 예정교 위치도



신설 예정교 위치도



(별첨 4)

| | |
|--------------|-------------------------|
| 의안번호 | 제 1기-3호 |
| 의 결 년 월 일 | 2001. 9. 1. (제/2/ 회) |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2001. 8. 27. |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 | |
|----------|---------|
| 의안 번호 | 131 - 3 |
|----------|---------|

제출년월일 : 2001. 8. 2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학교운영지원과

□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취득】

| | | | | |
|------------|------|---------------------|-------------------------------|-------------------------------|
| ○ 교실 증축 | 청주고 | 810m ² | 충북고 | 630m ² |
| | 청주여고 | 720m ² | 중앙여고 | 810m ² |
| | | | <u>계 : 2,970m²</u> | |
| ○ 계단실 증축 | 청주고 | 180m ² | 충북고 | 135m ² |
| | 청주여고 | 135m ² | 중앙여고 | 180m ² |
| | | | <u>계 : 630m²</u> | |
| ○ 화장실 증축 | 청주고 | 180m ² | 충북고 | 60m ² |
| | 중앙여고 | 60m ² | | |
| | | | <u>계 : 300m²</u> | |
| ○ 다목적강당 증축 | 서원중 | 1,074m ² | 대소초 | 966m ² |
| | | | | <u>계 : 2,040m²</u> |

【공유재산의 처분】

○ 폐교재산 매각

· 어상천초 금당분교

| | |
|--------------------------|----------------------|
| -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79 (학교용지) | 7,790m ² |
| - 위 지상건물 11동 | 888.31m ² |
| - 위 공작물 | 23종 |
| - 위 입목죽 | 25본 |

· 단양초 노동분교

| | |
|--------------------------|------------------------|
| -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265 (학교용지) | 5,653m ² |
| - 위 지상건물 8동 | 1,008.83m ² |
| - 위 공작물 | 32종 |
| - 위 입목죽 | 24본 |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 : 덧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설명자료 : 별책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m, 천원)

| 구분 | | 상반기 | | | 하반기 | | | 합계 | | |
|----------|------------|-----|----|----|-------|-----------|-----------|-------|-----------|-----------|
| |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 취득 | 계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6 | 5,940 | 4,644,464 | 6 | 5,940 | 4,644,464 |
| | | 기타 | | | | | | | | |
| | 1. 매입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2. 교환으로 취득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3. 기타 취득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6 | 5,940 | 4,644,464 | 6 | 5,940 | 4,644,464 | |
| | 기타 | | | | | | | | | |
| 처분 | 계 | 토지 | | | 2 | 13,443 | 51,069 | 2 | 13,443 | 51,069 |
| | | 건물 | | | 2 | 1,897.14 | 270,875 | 2 | 1,897.14 | 270,875 |
| | | 기타 | | | 2 | | 30,101 | 2 | | 30,101 |
| | 4. 매각 | 토지 | | | 2 | 13,443 | 51,069 | 2 | 13,443 | 51,069 |
| | | 건물 | | | 2 | 1,897.14 | 270,875 | 2 | 1,897.14 | 270,875 |
| | | 기타 | | | 2 | | 30,101 | 2 | | 30,101 |
| | 5. 양여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6. 기타 처분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취득대상 재산목록(7-2)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 천원)

| 일련 번호 | 재 산 의 표 시 | | | | 추 정 가 액 | 취 득 시 기 | 취 득 사 유 |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 비고 |
|----------|-----------|-----|----------------------|-------|------------|------------|---------|----------------------|----|
| | 기관명 | 구 분 | 소 재 지 | 수 량 | | | | | |
| 1 | 청주고 | 건 물 |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869 | 1,170 | 969,650 | 하반기 | 교육여건 개선 | 교육감 | 1쪽 |
| 2 | 충북고 | 건 물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33 | 825 | 610,833 | 하반기 | 교육여건 개선 | 교육감 | 2쪽 |
| 3 | 청주여고 | 건 물 |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534 | 855 | 589,877 | 하반기 | 교육여건 개선 | 교육감 | 3쪽 |
| 4 | 중앙여고 | 건 물 |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 | 1,050 | 785,104 | 하반기 | 교육여건 개선 | 교육감 | 4쪽 |
| 5 | 서원중 | 건 물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486-3 | 1,074 | 889,000 | 하반기 | 교육환경 개선 | 교육감 | 5쪽 |
| 6 | 대소초 | 건 물 |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 | 966 | 800,000 | 하반기 | 교육환경 개선 | 교육감 | 6쪽 |
| 계 | 6교 | | | 5,940 | 4,644,464 | | | | |

처분대상 재산목록(7-4)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 / 천원)

| 일련 번호 | 재 산 의 표 시 | | | | 대 장 금 액 | 처 분 시 기 | 처 분 사 유 | 매수 희망자 주소·성명 | 비고 |
|----------|---------------|-----|--------------------|----------|------------|------------|------------|-----------------------------------|-----|
| | 기 관 명 | 구 분 | 소 재 지 | 수 량 | | | | | |
| 1 | 어상천초 금당분교 | 토 지 | 단양군 어상천면 삼곡리 79 | 7,790 | 27,444 | 하반기 | 폐교재산 매각 |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대한불교천태종) | 7쪽 |
| | | 건 물 | " | 888.31 | 157,902 | " | " | 구인사 | 8쪽 |
| | | 공작물 | " | 23종 | 13,953 | " | " | " | " |
| | | 입목죽 | " | 25본 | 1,462 | " | " | " | " |
| 2 | 단 양 초 노동분교 | 토 지 |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265 | 5,653 | 23,625 | 하반기 | 폐교재산 매각 | 단양군수 | 9쪽 |
| | | 건 물 | " | 1,008.83 | 112,973 | " | " | " | 10쪽 |
| | | 공작물 | " | 32종 | 14,393 | " | " | " | " |
| | | 입목죽 | " | 24본 | 293 | " | " | " | " |
| 계 | 2 교 | 토 지 | | 13,443 | 51,069 | | | | |
| | | 건 물 | | 1,897.14 | 270,875 | | | | |
| | | 공작물 | | 55종 | 28,346 | | | | |
| | | 입목죽 | | 49본 | 1,755 | | | | |
| | | 계 | | | 352,045 | | | |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 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 1 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회의의 의결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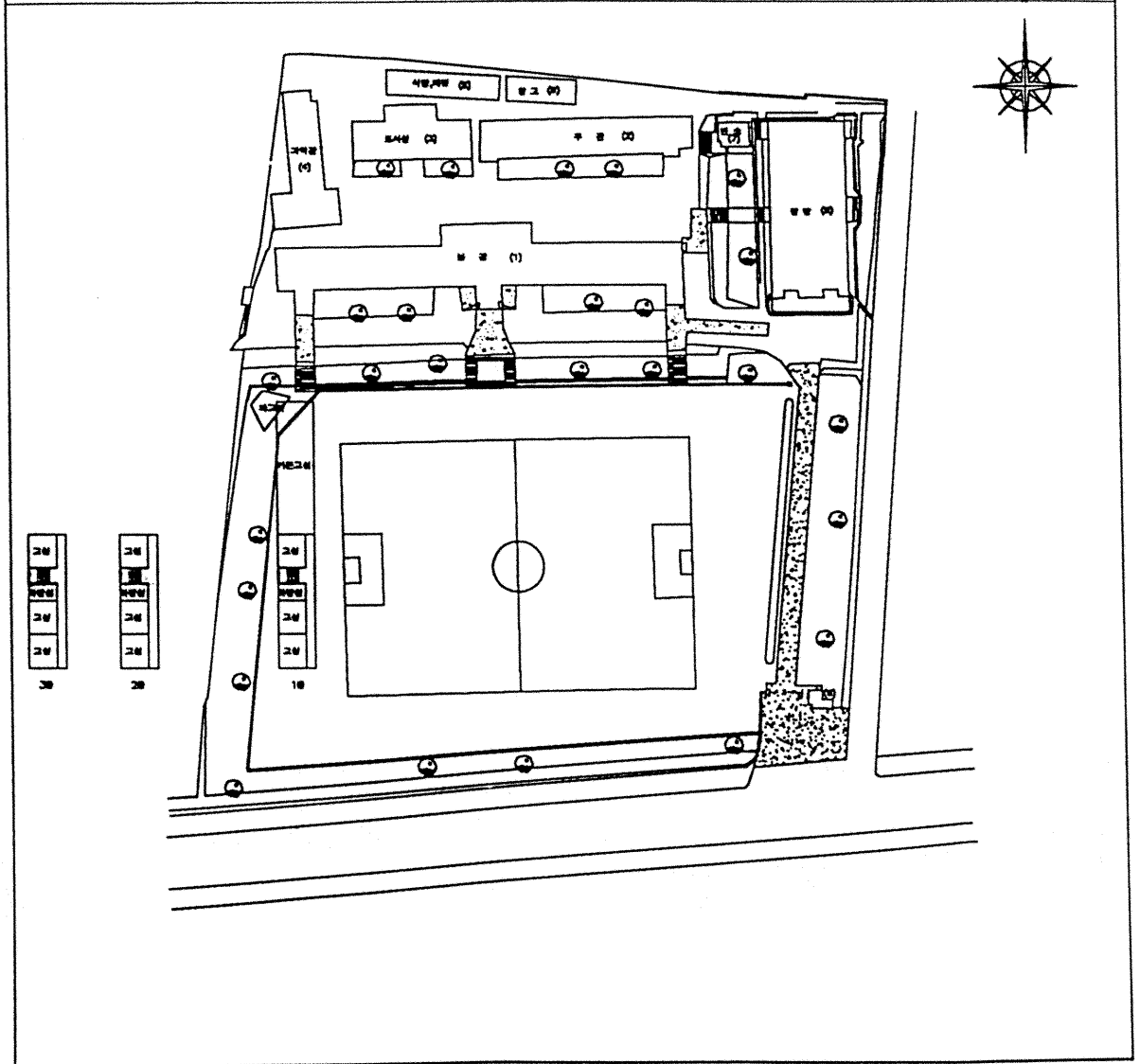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 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설 명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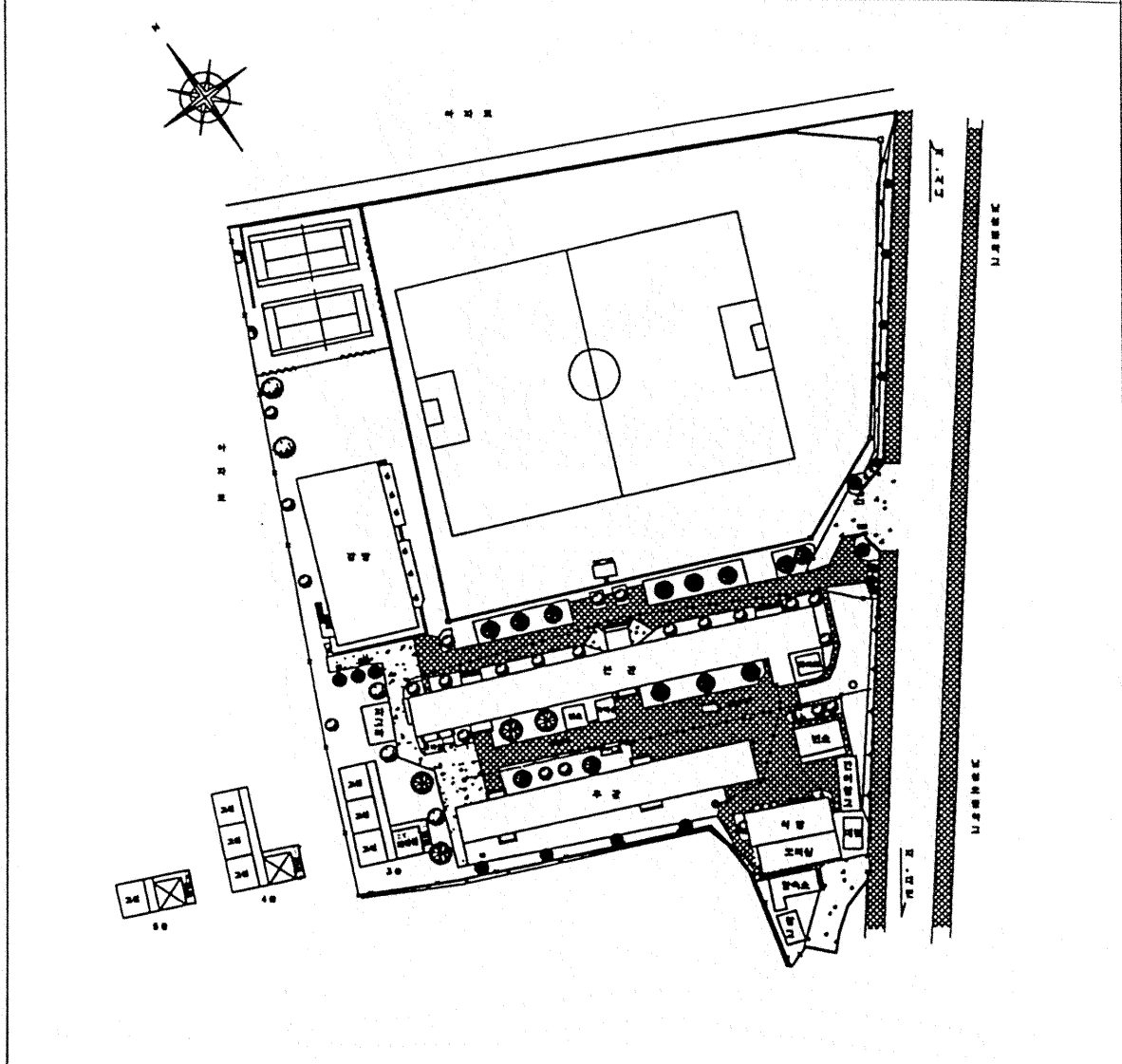
청주고등학교 건물취득배치도

| 용 도 | 소 재 지 | 지 번 | 구 조 | 면 적 (㎡) | 취득금액 (천원) | 사 유 |
|------|---------|-----|-------|------------|--------------|--------|
| ①교 실 | 청주시 흥덕구 | 869 | 철·콘·슬 | 810 | 612,550 | 교육여건개선 |
| ②계단실 | 북대동 | | 철·콘·슬 | 180 | 113,200 | |
| ③화장실 | | | 철·콘·슬 | 180 | 243,900 | |
| 계 | | | | 1,170 | 969,65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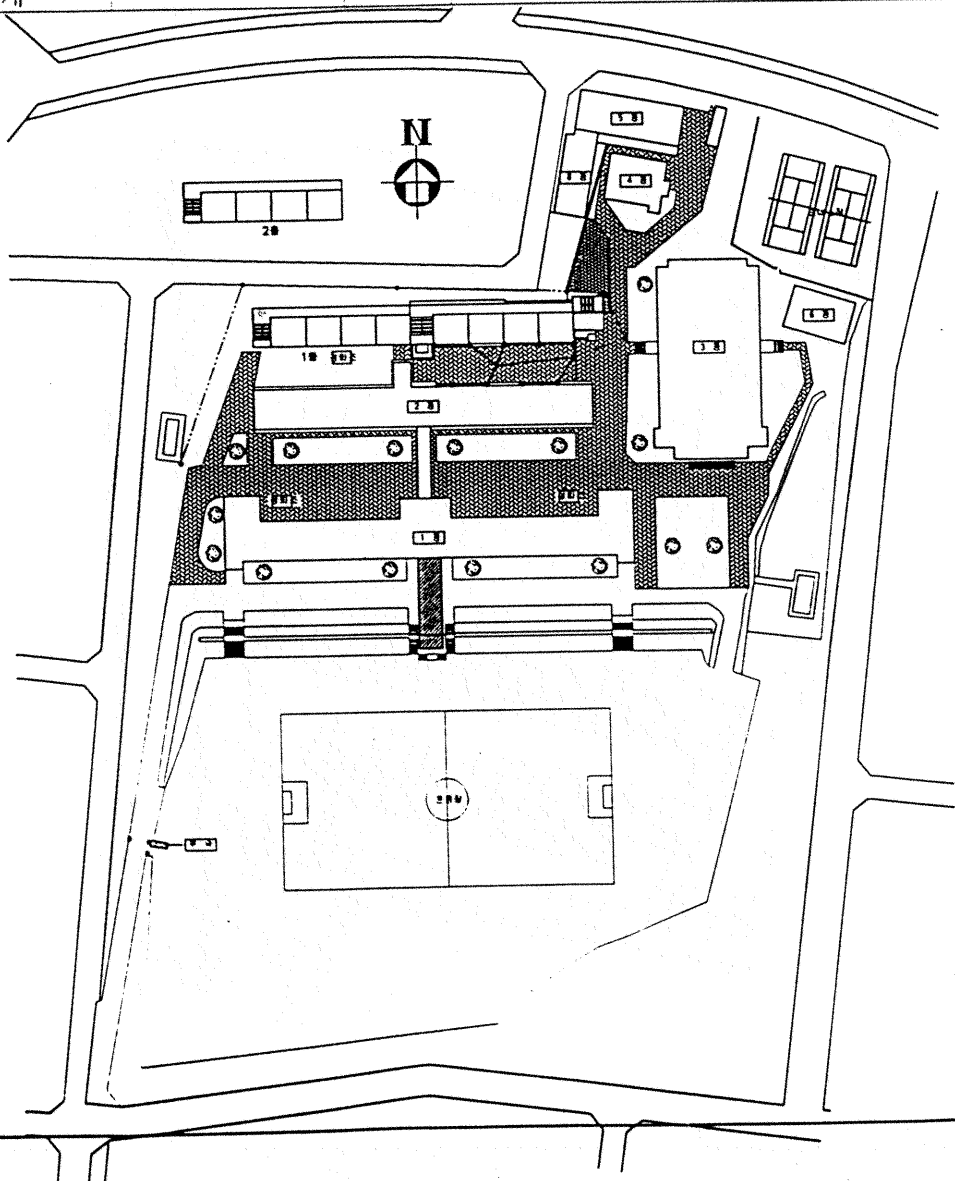
충북고등학교 건물취득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구조 | 면적 (㎡) | 취득금액 (천원) | 사유 |
|------|---------|-----|-------|-----------|--------------|--------|
| ①교실 | 청주시 흥덕구 | 233 | 철·콘·슬 | 630 | 444,633 | 교육여건개선 |
| ②계단실 | 분평동 | | 철·콘·슬 | 135 | 84,900 | |
| ③화장실 | | | 철·콘·슬 | 60 | 81,300 | |
| 계 | | | | 825 | 610,83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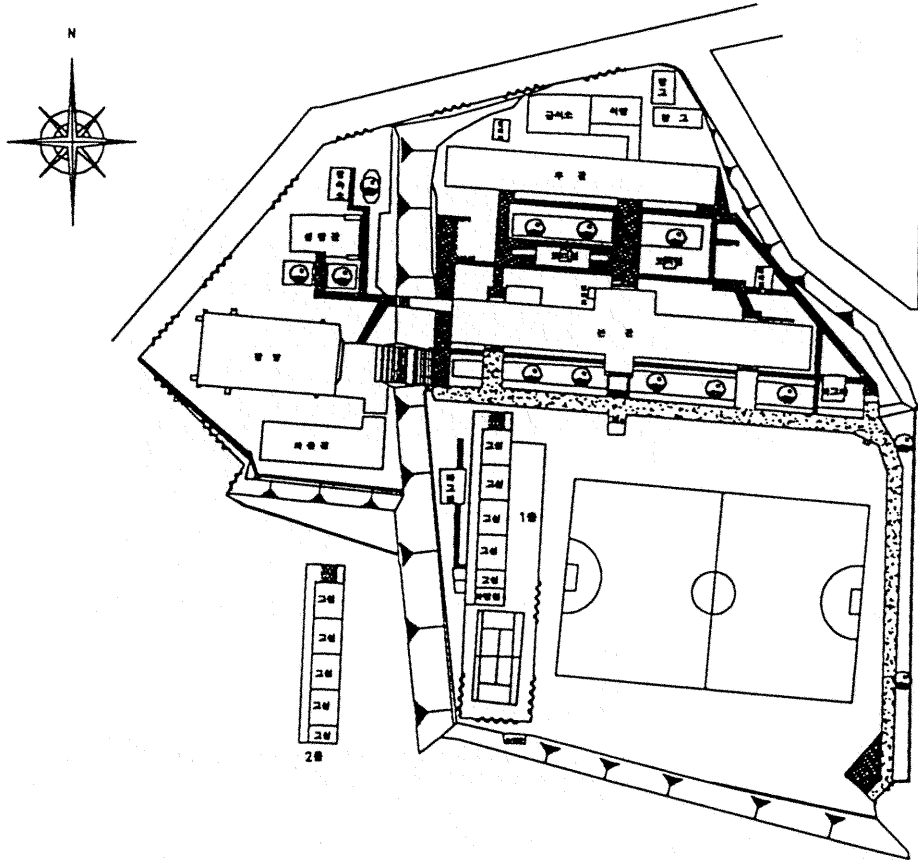
청주여자고등학교 건물취득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구조 | 면적 (㎡) | 취득금액 (천원) | 사유 |
|------|---------|-----|-------|-----------|--------------|--------|
| ①교실 | 청주시 상당구 | 534 | 철·콘·슬 | 720 | 504,977 | 교육여건개선 |
| ②계단실 | 울랑동 | | 철·콘·슬 | 135 | 84,900 | |
| 계 | | | | 855 | 589,87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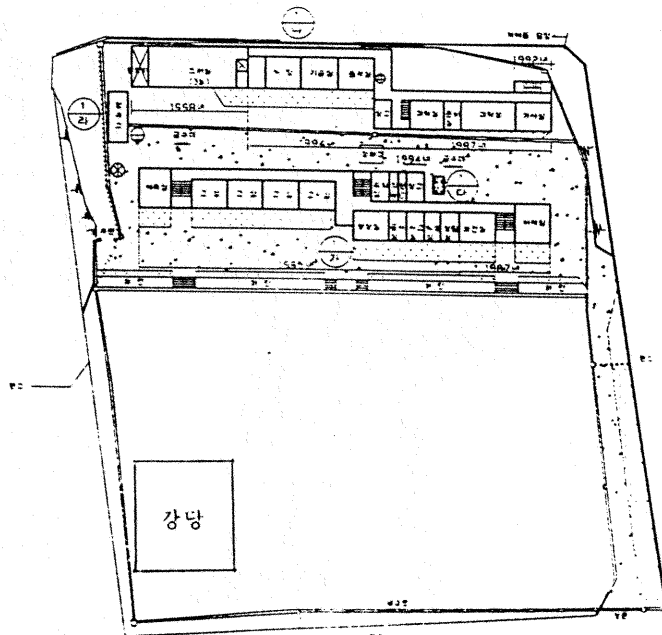
중앙여자고등학교 건물취득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구조 | 면적 (m ²) | 취득금액 (천원) | 사유 |
|------|---------|-----|-------|-------------------------|--------------|--------|
| ①교실 | 청주시 흥덕구 | 227 | 철·콘·슬 | 810 | 590.604 | 교육여건개선 |
| ②계단실 | 사창동 | | 철·콘·슬 | 180 | 113.200 | |
| ③화장실 | | | 철·콘·슬 | 60 | 81.300 | |
| 계 | | | | 1,050 | 785.10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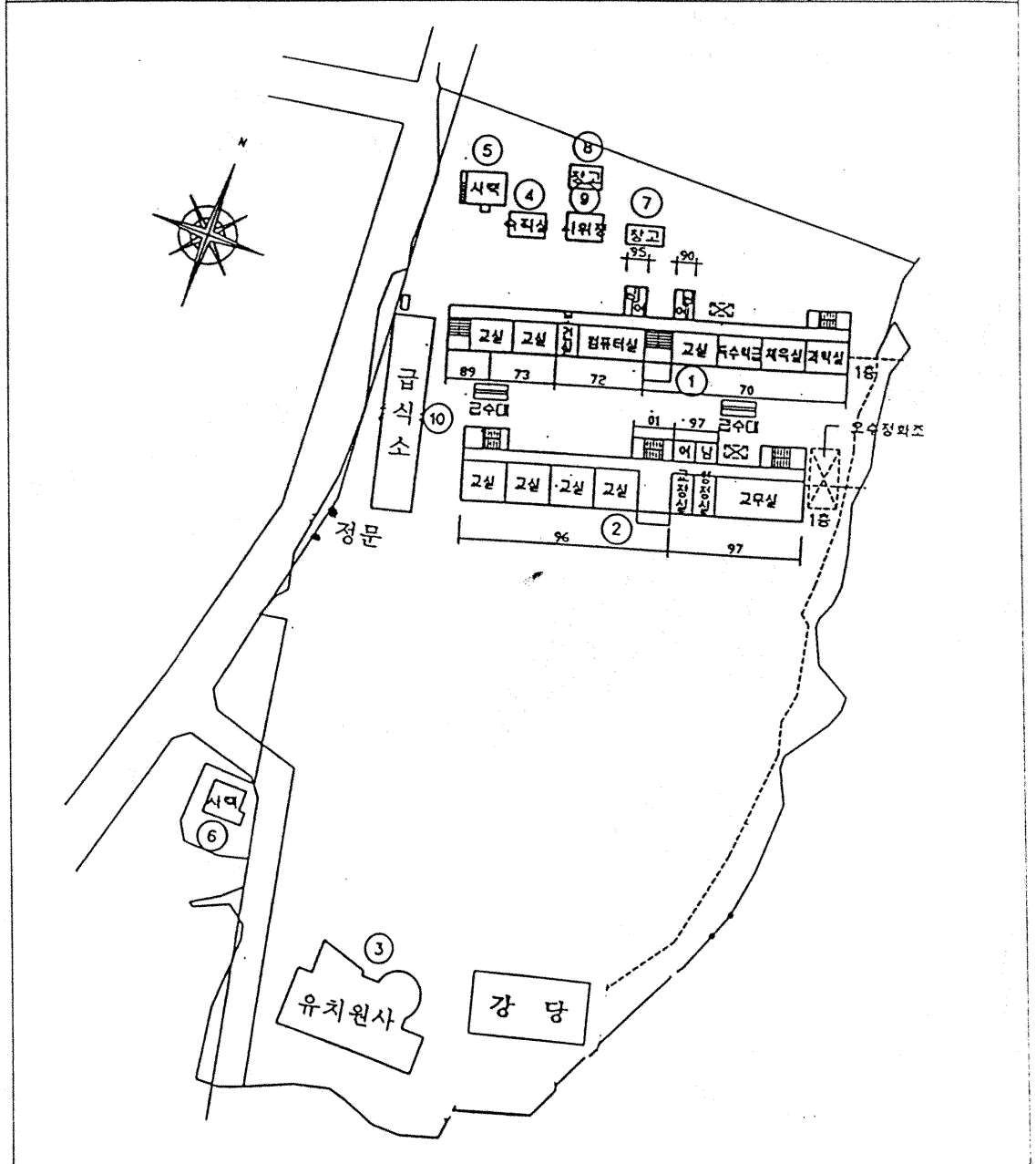
서원중 건물 취득 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구조 | 면적 (㎡) | 취득금액 (천원) | 사유 |
|----------------|-------------|-------|-------|-----------|--------------|------------|
| 다목적강당 (체육관)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 486-3 | 철·콘·판 | 1,074 | 889,000 | 교육환경 개선 |
| 계 | | | | 1,074 | 889,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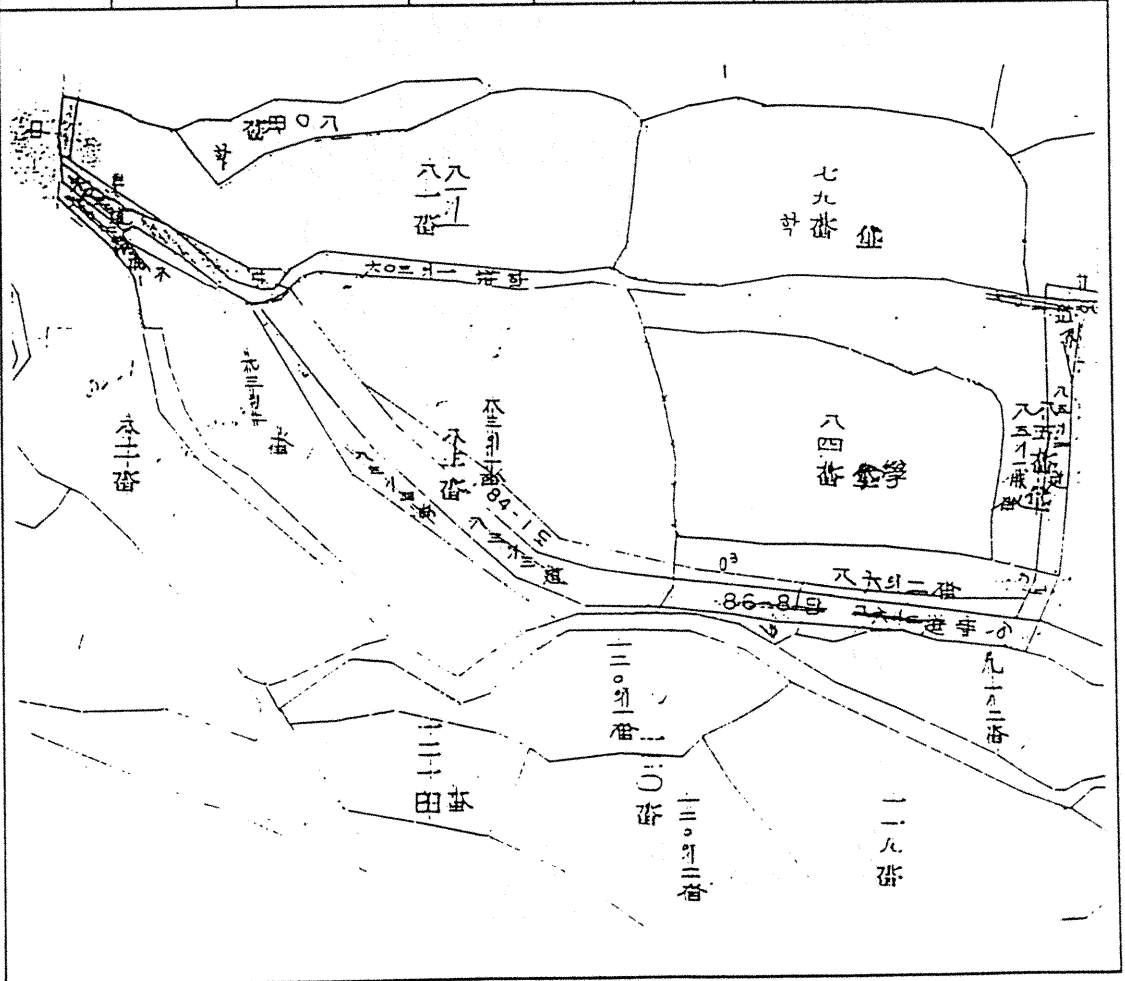
대소초 건물 취득 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지목 (구조) | 면적 (㎡) | 취득금액 (천원) | 사유 |
|----------------|----------------|-------|------------|-----------|--------------|---------|
| 다목적강당 (체육관) |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 186-1 | 철.콘.판 | 966 | 800,000 | 교육환경 개선 |
| 계 | | | | 966 | 800,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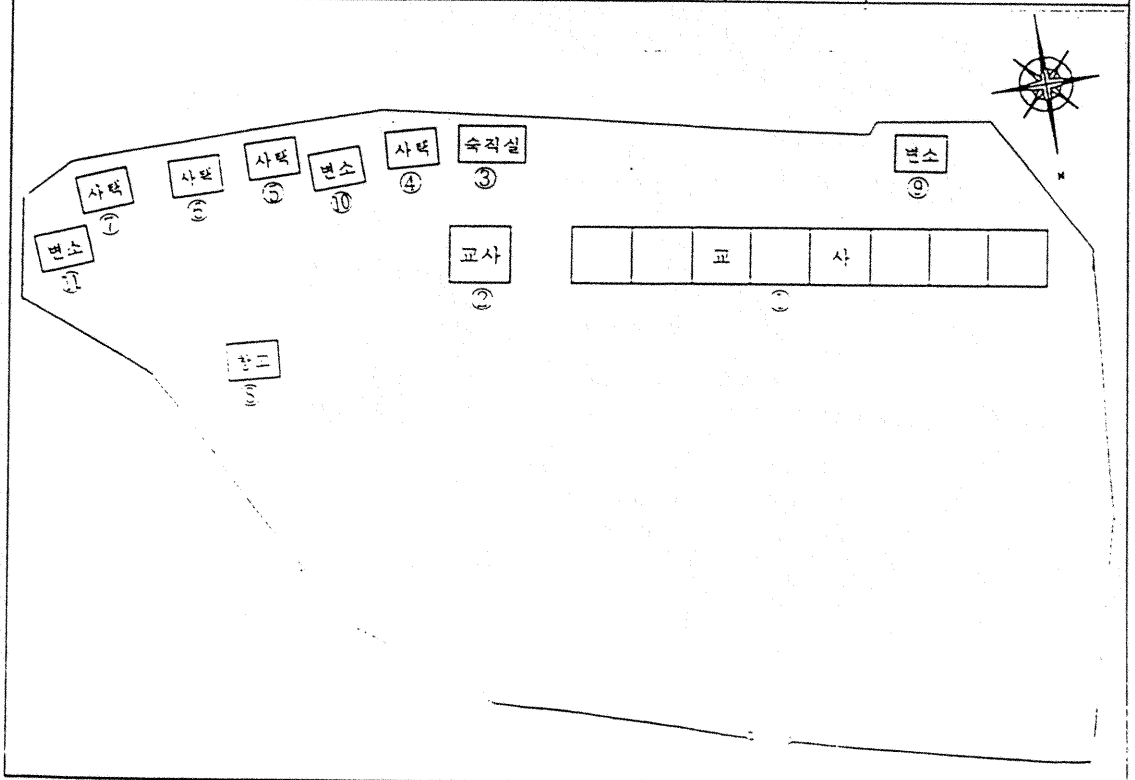
어상천초 금당분교 토지 처분 위치도

| 번 호 | 용 도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구조) | 면 적 (㎡) | 대장금액 (천원) | 사 유 |
|-----|------|-------|------|-------------|------------|--------------|---------------------------|
| ① | | | 79 | 학 | 1,640 | 4,526 | 폐교재산매각, 교육환경개선 재원확보 |
| ② | | 단양군 | 80 | 학 | 317 | 874 | |
| ③ | 잡종재산 | 어상천면 | 81-1 | 답 | 1,796 | 6,735 | |
| ④ | | 심곡리 | 84 | 학 | 3,184 | 11,940 | |
| ⑤ | | | 85-1 | 답 | 853 | 3,369 | |
| | 계 | | 5필지 | | 7,790 | 27,44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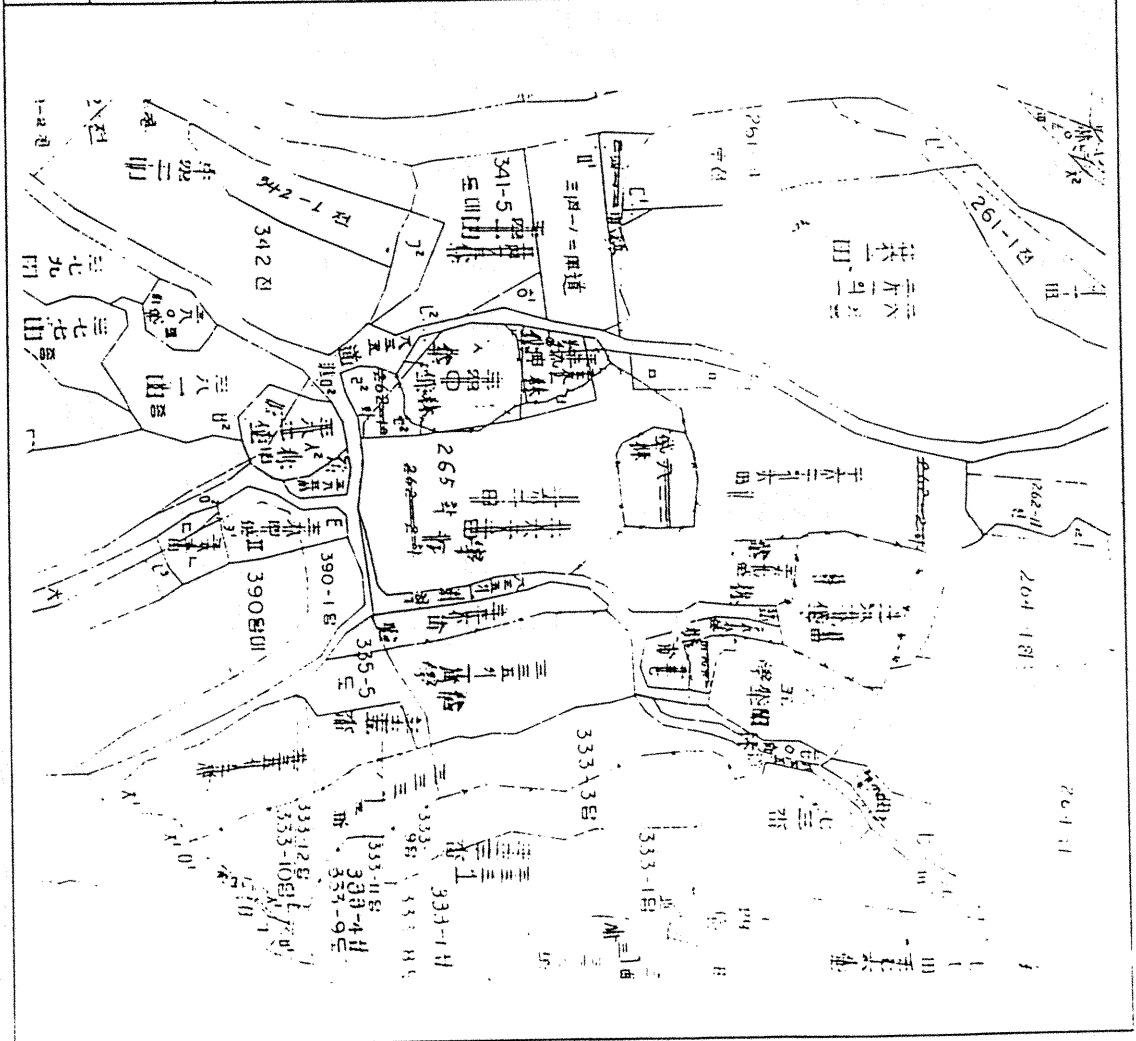
어상천초 금당분교 건물 처분 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구조 | 면적 (㎡) | 대장금액 (천원) | 사유 |
|------|-------------|----|-------|-----------|--------------|---------------------------|
| ①교사 | 어상천면 심곡리 | 79 | 철.콘.스 | 534.00 | 127,010 | 폐교재산매각, 교육환경개선 자원확보 |
| ②교사 | | | 철.콘.스 | 91.80 | 7,119 | |
| ③숙직실 | | | 시.벽.스 | 36.36 | 1,325 | |
| ④사택 | | | " | 33.00 | 1,325 | |
| ⑤사택 | | | " | 33.00 | 1,315 | |
| ⑥사택 | | | " | 33.00 | 2,320 | |
| ⑦사택 | | | 벽돌조슬 | 55.08 | 7,900 | |
| ⑧창고 | | | 시.벽.슬 | 26.60 | 2,215 | |
| ⑨변소 | | | 시.벽.스 | 33.00 | 5,280 | |
| ⑩변소 | | | " | 3.92 | 752 | |
| ⑪변소 | | | " | 8.55 | 1,341 | |
| 계 | | | 11동 | 888.31 | 157,902 | |
| 공작물 | | | | 23종 | 13,953 | |
| 입목죽 | | | | 25본 | 1,46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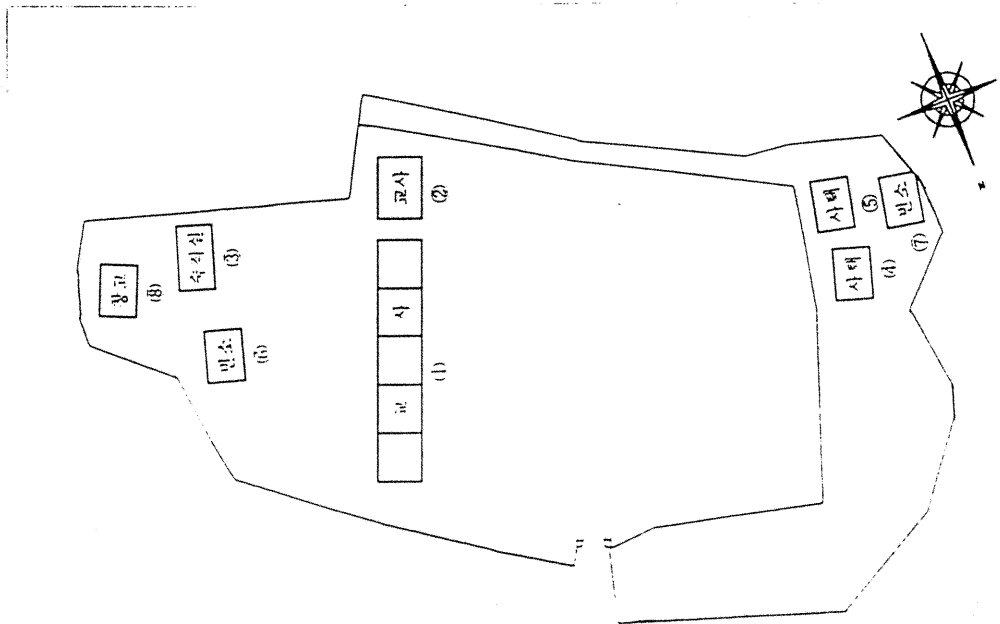
단양초 노동분교 토지 처분 위치도

| 번호 | 용도 | 소재지 | 지번 | 지목 (구조) | 면적 (㎡) | 대장금액 (천원) | 사유 |
|----|------|-------------------|-------|------------|-----------|--------------|---------------------------|
| ① | 잡종계산 |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 265 | 학 | 4,424 | 19,023 | 폐교재산매각, 교육환경개선 재원확보 |
| ② | | | 262-7 | 학 | 104 | 469 | |
| ③ | | | 262-8 | 학 | 176 | 793 | |
| ④ | | | 335-1 | 학 | 949 | 3,340 | |
| | 계 | | 4필지 | | 5,653 | 23,625 | |



단양초 노동분교 건물 처분 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구조 | 면적 (㎡) | 대장금액 (천원) | 사유 |
|------|-------------------|-----|-------|-----------|--------------|---------------------------|
| ①교사 |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 265 | 시.벽.스 | 705.60 | 66,887 | 폐교재산매각, 교육환경개선 재원확보 |
| ②교사 | | | 시.벽.슬 | 82.60 | 3,267 | |
| ③숙직실 | | | 시.벽.스 | 43.00 | 1,988 | |
| ④사택 | | | " | 71.63 | 12,566 | |
| ⑤사택 | | | " | 32.00 | 10,473 | |
| ⑥변소 | | | " | 33.00 | 9,906 | |
| ⑦변소 | | | " | 11.00 | 1,885 | |
| ⑧창고 | | | " | 30.00 | 6,001 | |
| 계 | | | 8동 | 1,008.83 | 112,973 | |
| 공작물 | | | | 32중 | 14,393 | |
| 입목죽 | | | | 24본 | 293 | |



(별첨 5)

| | |
|--------------|---------------------|
| 의안번호 | 제 131-4호 |
| 의 결 년 월 일 | 2001. 8. . (제 회)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2001. 8. 21.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31-4

제출년월일 : 2001. 8. 2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845억 6,666만 7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411억 896만 7천원이 증액된 9,256억 7,563만 4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69억 7,802만 8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3억 6,708만 8천원, 지방교육채 327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14만 9천원을 감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433억 5,514만 7천원, 교육행정 1억 534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비비 중 23억 5,152만원을 감액하였음.

예산(안) : 별책

사항별 설명서 : 별책

(별첨 6)
(제131회 임시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9.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1년 8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8월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가. 제안사유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제로 도입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로 제명(題名) 및 개인과외교습 관련사항이 변경·개정되어 2001년 4월 7일 공포되고,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함(안 조례 제명).
- 목적중 관련법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 개인과외교습에 따른 교습중지명령 방법 등을 신설((안 제9조의2).
- 학원의 시설규모의 분야중 입시·검정란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하고, 동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에 초등학교도 수강이 가능하게 하

였으며, 동 교습과정에 보충학습란을 신설하고, 보충학습의 시설규모를 강의실 연면적 60㎡이상으로 함(안 별표 1).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중 자동차 운전 부분을 삭제함(안 별표 2).
-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중 자동차운전 부분을 삭제함(안 별표 3).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제로 도입하여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제명 및 개인과외교습 관련사항이 변경·개정되어 2001년 4월 7일 공포되고, 동법률시행령이 2001년 7월 7일 공포되어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도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 6명, 찬성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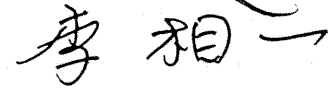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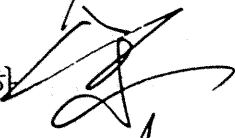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9. 1.

조례심사소위원회

| | | |
|-----|-------|--|
| 위원장 | 조 일 환 |  |
| 간사 | 이 상 일 |  |
| 위원 | 김 광 수 |  |
| | 송 진 하 |  |
| | 이 기 수 |  |
| | 이 충 원 |  |

(별첨 7)
(제131회 임시회)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1. 9.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8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소위원회(2001년 8월 29일)

○ 제2차 소위원회(2001년 8월 3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84,566,667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41,108,967천원이 증액된 925,675,634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6,978,028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367,088천원, 지방교육채 32,769,000천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149천원을 감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43,355,147천원, 교육행정 105,34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중 2,351,520천원을 감액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884,566,667천원보다 41,108,967천원이 증가한 925,675,634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 감 | | 비 고 |
|-------------|-------------|------------|--------|-----|
| | | 금 액 | 비 율 | |
| 925,675,634 | 884,566,667 | 41,108,967 | 4.6% 증 | |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6,978,028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149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367,088천원, 지방교육채 32,769,0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장 관 별 | | 금 액 | 구성비(%) |
|-------------------|---------|------------|--------|
| 국가부담수입 | 지방재정교부금 | 4,810,000 | 11.7 |
| | 국고지원금 | 2,168,028 | 5.3 |
| | 소 계 | 6,978,028 | 17.0 |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 비법정전입금 | △5,149 | 0 |
|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 재산수입 | 1,367,088 | 3.3 |
| 지방교육채 | 지방교육채 | 32,769,000 | 79.7 |
| 합 계 | | 41,108,967 | 100.0 |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43,355,147천원, 교육행정 105,340천원, 예비비 △2,351,52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장 관 별 | | 금 액 | 구성비(%) |
|-------|--------|------------|--------|
| 학교교육 | 초등학교 | 1,314,828 | 3.2 |
| | 중 학교 | 3,359,974 | 8.2 |
| | 고등학교 | 38,680,345 | 94.1 |
| | 소 계 | 43,355,147 | 105.5 |
| 교육행정 | 교육청 | 34,440 | 0 |
| | 교육지원기관 | 70,900 | 0.2 |
| | 소 계 | 105,340 | 0.2 |
| 기타경비 | 예비비 | △2,351,520 | △5.7 |
| 합 계 | | 41,108,967 | 100.0 |

□ 주요사업별예산편성 내역

| | |
|-----------------|--------------|
| ○ 시설비 | 41,053,401천원 |
| . 시설확충 | 7,106,344천원 |
| . 일반시설 | 4,810,000천원 |
| . 학교신설 | 27,861,429천원 |
| . 기타시설 | 1,275,628천원 |
| ○ 실업교육 지원 | 1,814,433천원 |
| . 직업교육 확충 | 1,158,820천원 |
| . 멀티미디어 확충 | 663,850천원 |
| . 자연농과 운영 | △8,237천원 |
| ○ 학교급식 지원 | 191,355천원 |
| . 중학교 급식확대 | 191,355천원 |
| ○ 교육활동지원 | 204,758천원 |
| . 교육정보화 | 200,000천원 |
| . 학교체육활동 지원 | 3,158천원 |
| . 학예행사 지원 | 1,600천원 |
| ○ 교원연수 | 131,100천원 |
| . 실업계고 산업체 현장연수 | 96,000천원 |
| . 정보화연수 | 35,100천원 |

나. 종합의견

금번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금과 지방교육채 등의 재원으로 OECD 수준에 근접하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부족교실 증축과 신설학교 시설사업비 및 부지매입비 지원, 직업교육 확충, 중학교 급식확대, 교육활동 지원 등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음.

- 다만, 기채를 함에 있어서 자금상황과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차입시기와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여 동시에 차입함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차입이자 또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금융기관의 대여이율 및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차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02학년도 3월 신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공사소음으로 인한 수업방해의 최소화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 등 건축공사 감독에 철저는 물론, 부족교사 충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 6명, 찬성 6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9. 1.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 충 원



간사 이 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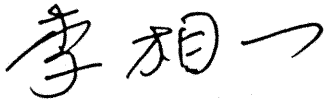
위원 김 광 수



송진하



이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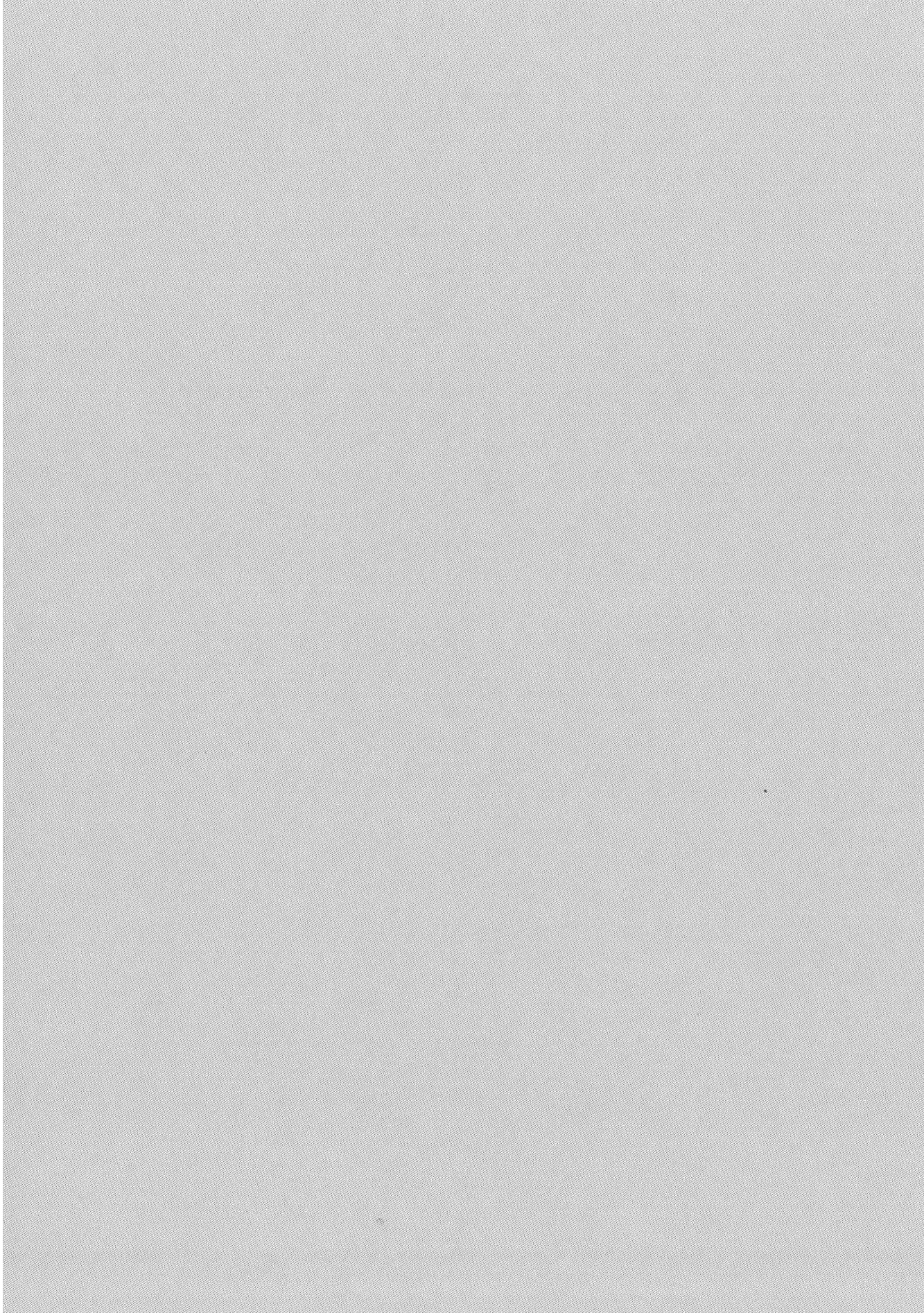
조일환



第13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93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10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12시 08분

議事日程 (제131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2시 08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일환

미안합니다, 자청을 하고 위원장이 돼서, 그 동안에 조례 쪽에 밑에서 하도 떠들고 해서 이번에는 떠들 것도 없고, 제가 위원장을 자청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선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 이기수 위원

이상일 위원님.

● 위원장 조일환

이상일 위원님 하시겠어요?

● 이상일 위원

예

● 위원장 조일환

이상일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출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뭐 하실 말씀.

● 간사 이상일

이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2시 10분)

● 위원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사일정결정의건인데 아까 이충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일정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거 내용을 봐도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의견인데 별반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속개를 해서 더 하면 점심 잡숫고 하시고, 시간조정을 제가 할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도 없고 해서 의사일정은

제가 제의한 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증개정조례안**

(12시 12분)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우선 상정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시 들으실 필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하였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석 순대로 했는데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래서 자유토론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되도록 이쪽부터 가셔서 의견좀 말씀해 주세요.

● **이기수 위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위원장님, 순서대로 있느냐 물어봐서 진행하죠.

● **위원장 조일환**

그렇까요?

그럼 김광수 위원님 뭐 의견 있으십니까?

●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교습소가 이제 신고제로 바뀐 것 같은데, 신고를 받는 것이 가능한 건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개인과외교습소를 신고제로 해 갖고서 공포를 해서 저희들이 000업종을 받았습시다. 받았는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많이 접수될 줄 알았습시다만은 신고자 수가 그래도 514, 그리고 수강인원이 3,200명,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했습시다만은 그 수강료도 들쭉날쭉 해 가지고 최고 50만원부터 최하 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미 신고된 것도 접수를 해 가지고 1차 신고없이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두 번째는 신고 접수할 때는 200만원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이번에 문제점으로 발견돼서 하게 됐습시다.

● **위원장 조일환**

다른 말씀 없으세요?

● **김광수 위원**

예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송진하 부의장님.

● **송진하 위원**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이기수 위원님.

● **이기수 위원**

조례를 원하는 조치로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고맙습시다.

● **간사 이상일**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개인과의교습을 신고하게 돼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간사 이상일

그런데 이제 미신고자가 지금 많다고 하는 애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미신고자들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면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만 하면 되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죠, 과태료를.....

● 간사 이상일

아, 우리가 부과권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간사 이상일

그리고 그 개인교습, 개인교습에 대한 열마를 받으라고 하는 그 교습비에 대한 무슨 어떤 상세한 규정은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다가.....

● 간사 이상일

자율적으로 받고, 단지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해라, 그것만 신고하는 거지 수강료를 얼마를 받든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제한이 없습니다.

● 간사 이상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우리 이충원 위원님.

● 이충원 위원

이것이 교육부에서 만든 그 준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단독적으로 충청북도만 하는 게 아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동일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받고 학원연합회, 또 그래도 세군데의 대표적인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네 분이 똑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청북도 평생교육체육과의 학원 담당 공무원이 마인드가 변했다, 마인드가, 사무도 그 전에는 찾아와라, 이러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르는 것까지 안내하고 이래서 상당히 평생교육체육과 직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원인을 해결한 자세가 좋더라, 이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담당을 하시는 분한테 격려를 하시면서 계속, 또 평생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전파돼서 우리 충북교육이 행정의 적극적인 이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특히 민간이나 이견 이해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시기 전에 물론 하셨습니다만은 유인물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기 개인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개인이나 유관기관이나 사전에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로 많이 하시도록, 물론 테두리 내에서 하시겠습니까만은, 그 다음에 조례를 보시면 위원님들 다 보셨겠습니까만은 뭐 거의가, 거의가 초등학교가 없던 것을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초등학교 했다는 거, 실제. 그래서 이것이 양성화 됐다,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규제완화가 이게 기준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졌으니까 60㎡로 내려졌으니까

90㎡로 올렸던 사람도 상당히 저거되는데 이것도 학원의 칸막이 같은 것도 아주 자율적으로 맡겼다, 이래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을 끝으로 협의를 마치면서 부탁드립니다 것은, 역시 학원은 뭐니뭐니 해도 공교육을 능가하는 그러한 교육의 기법이랄까, 수요자의 비위에 맞춘, 욕구에 맞는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공교육이 거기서 저서는 안되고, 또 이들은 우리 공교육과 달라서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당하게, 부당하게 학원을 한다든지, 또 학원료를 부당하게 많이 계상했을 때는 행정지도를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점심시간도

[제131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늦었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좋으신 의견을 모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본 위원장이 이렇게 원활하게 위원장 직을 수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양 기관의 관

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0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조일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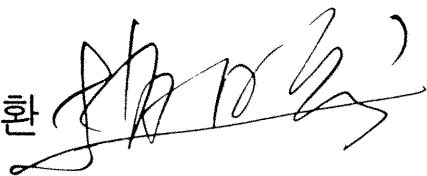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본회의(별첨 2)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9. .

위원장

조 일 환



(별첨 1)

제131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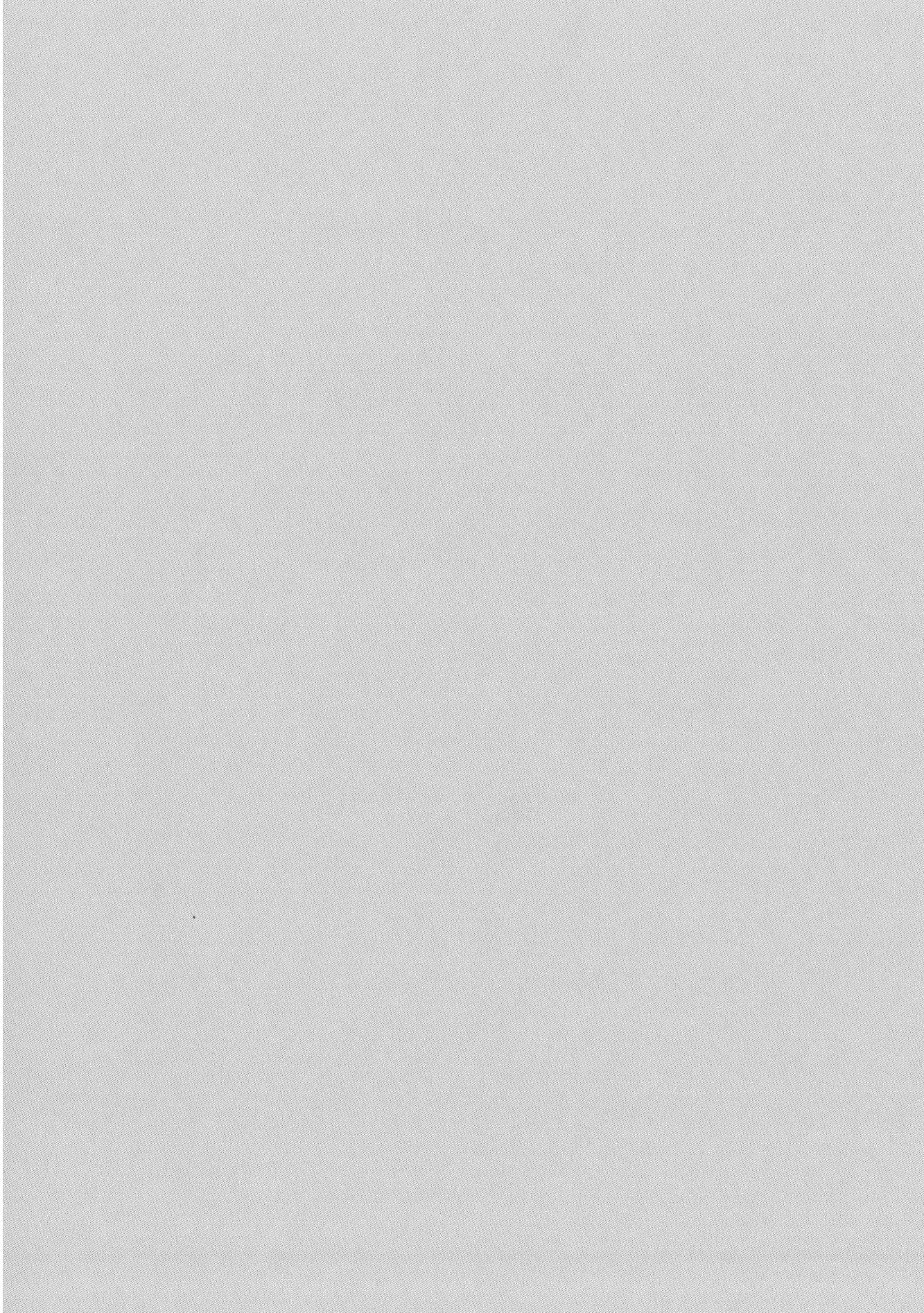
○기간 : 2001. 8. 29(수)/1일간

| 일 사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2001. 8. 29.(수) ● 12:00~ | ○ <u>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u> - 위원장선출의건 - 간사선출의건 - 의사일정결정의건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심사·의결) * 산 회 * | |

第13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107
- II.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111
- III. 부 록
 -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159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12시 00분

議事日程 (제131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2시 00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이충원 위원님 한번도 안하셨네요.

이충원 위원님을 저는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예,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충원

부족한 저를 이번 회의에 예산·결산소위원회 책임을 맡겨주셔서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입버릇마냥 말씀을 드렸는데, 수에 아주 둔감한 사람인데 잘 해 나갈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최선의 성의를 다해서 원만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2시 04분)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서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금방 전에 저를 선출해 주신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후보자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이기수 전 부의장님 어떠세요?

● 이기수 위원

하죠, 뭐.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방금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이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소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2시 06분)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8월 31일, 2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1일 제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일 심사시간을 좀 협의해야겠는데요, 몇시쯤 좋으시겠습니까? 31일날, 10시냐, 11시냐, 10시쯤?

● 간사 이기수

예, 10시입니다. 10시에 오시기가.....

● 위원장 이충원

충주 오시기가 괜찮으시죠?

● 이상일 위원

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김위원님.

● 김광수 위원

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럼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는데, 재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일날은 10시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상일, 조일환.

○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8월 31일 (금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1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견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 위원장 이충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본 추경예산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신 기획관리과장님의 보충설명을 우선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 참 조 :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별책 3)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다른 질의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제가 할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떻습니까? 전과 같이 가나다 순서로 해서.....

(“예,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좌석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요번에 추경이 411억이라고 하는 대단히 많은 추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중·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학생수와 학급수, 지금 현재. 요번에 증설하는 학교, 학급수, 그 다음에 향후 3년 후에 지금 학교 증설을 하고 했을 적에 학생수와 그 학급수, 이걸 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와 학급수, 또 증설 학급수와 3년 후에 학급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상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중심으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고등학교 수는 학급수가 1,557개 학급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그 일 반계가 대부분 55.6%, 나머지 44.4%가 실업 계입니다. 그리고 2002학년도에 1,657학급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학생수는 5만 8,511명으로 약 1,757명이 주는 대신에 100학급이 늘어납니다. 또 순수한 자연증가 학급수는 112학급이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순 감이 되는 학급이 12학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급수만 느는 거는 100학급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제 기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학생수가 3년 후까지는 다소 줄니다. 그러나 학급수를 학생당 35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현재 자연 증가 100학급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학급수만 조금 늘어나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7월 20일날 대통령께 보고한 학생수 하향조정 에 대한 그 교육여건 개선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들이 7월 25일날 부교육감 회의가 소집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 26일날 이제 그 계획서를 받아 보고 우리 기획관리과 직원들이 밤새워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중앙언론에서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알으셔야 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그 지

침을 일일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사실상 놓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저 질문.....

● 위원장 이충원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전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까지, 또 초·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학생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하는 국가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언론지상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까지는 계속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또 부실하지 않도록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9페이지에 교실개축 증복여고에 29실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29실을 해도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요 교실개축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회기 때마다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던 증복여고의 교실, 그 본관 개축교실

로 29실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증복여고를 저희들이 올리는 48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이제 증복여고가 실질적으로 후관하고 본관으로 이루어졌는데 후관은 아직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내용연수에 해당되는 전관만 20억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해당 증복여고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20억을 가지고 질 수 있는 아웃트라인을 정해 본 결과, 학교 의견을 들어 봤더니 교실 29실, 화장실 3실, 기타, 뮌 계단실 등 기타시설로 20억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요번에 위원님들이 의결만 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여기 교실 20실을 개축하는데 다행히 증복여고가 지금 현재 있는 본관교실을 부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아마 장소를 그 캠퍼스 내에 조금 옮겨서 짓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실을 증복여고가 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나 도내에는 교실을 내용연도가 지난 그러한 교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29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내용연수가 오래된, 가장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 주는 그런 시책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으로 개축예산에 있어서는 내용연수가 지나고 또 교육시설로서는 사용하기가 부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순서를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해서 개축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은 그 이율이 7.5%로 재정용자 특별회계 이율보다 2.7%나 높는데 농협에서 기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그 금융기관에서 기채를 할 경우에 금융기관을 어느 특정기관으로 정하는 그런 지침이나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해서 그 금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계약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한 개의 우리 특별회계 금고를 지정해서 농협을 이제 관례적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회계 편리상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금리가 농협보다 더 싼 금융기관이 있다면은 저희들 기채를 금융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금융채가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금융채가 있는데 보통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농협 금융채를 저희들이 2000년 2월 28일날 317억 받을 때에는 금리가 8.25%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하향조정된 추세기 때문에 현재는 7.65%로 저희들이 그 이자를 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금리가 하향조정 추세에 맞추어 본다면은 저희들이 지금이 필요한 시기에서는 아마 7% 내지 7.3% 범위 내에서 금융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 아니더라도 금리가 가장 낮은 금융기관에서 기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특별회계에서는 안되나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이제 보통 정부에서 재특이 있는데, 재특은 저희들이 자금사정 때문에 일단 교육부로 신청을 하면은 교육부에서 재특의 대부 여유의 정도에 따라서 그 할당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싹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기채 승인이 간주 처리 돼서 내려온 걸로 보면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라고 지금 내려온 걸로 봐서 아마 재특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송진하 위원

이게 지금 농협에서 기채하는 것이 327억, 엄청난 돈입니다. 그 이율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율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에

요 이러한 많은 돈은 이율이 낮은 특별회계 쪽에서 얻어오도록, 또 아주 긴급한 이러한 용자 같으면은 농협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많은 예산 같으면은 이자를 생각해서 특별회계에서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물론 갚아 준다고는 하지만 그건 보장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채 이자를 좀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특회계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재특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재특을 먼저 사용하고, 그것이 부족한 부분만 농협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뭐 전액이 안되더라도 재특에서 최대한도로 끌어오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당해 연도 상환계획인 이자 84억, 금년내에 그 상환할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간 970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약 72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 있는데 지난 4월 23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6억의 이자가 왔습니다. 그 72억의 반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마 4/4분기에 돈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327억 얻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두차례의 서류에도 분명히 원금하고 이자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에서 자체로 부담하는 일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상환해야 할 1,298억, 우리 도의 1년 예산 약 14%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금년 여러가지 사업을, 퇴직이니 뭐니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해서 기채를 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래 어떻게 됐든 예산이 14%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할 때 이거는 아마 교육위원회가 생긴 이후 최고 많은 부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보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채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로서는 상당

히 부담감도 가고, 사실상 그 상환에 그 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집행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간부회의도 좀 해오고 거기에 대한 전망도 늘 토론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초 2000년도 그 이전에 그 명예퇴직자들이나 학교 신·중설 때에 기채를 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고, 갚아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현재까지 상황이 안되는 현 시점에서 또 다시 우리들 도에서 327억이라는 돈을 또 얻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걱정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은 요번에 정부예산 추경이 되면은 추경안에 추경으로 이걸 금년 안에 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주고, 만약에 이것이 금년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교부금으로 주겠다는 지침이 분명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금과 이자를 지방비, 순수한 지방비나 주민들이 부담하지는 않을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는 지금 거국적으로 지금 각 도마다 35명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5명씩 학급을 편성하는 이 과정에서 기채를 얻어서 일단 환경을 개선치 않을 경우를 저희들이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2005년이 됐든 내년도에 됐든 아니면 올 추경예산으로 됐든 다른 시·도에서 전부 다 이걸 기채로 얻어서 했는데

이걸 국가에서 다 갚아 주었으면 교실이나 학급 증축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 거고, 이걸 적기에 소홀히한 도에 대해서는 또 환경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결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송진하 위원

교육부에서도 지금 막대한 돈을 기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기채된 것은 갚아주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몰라도, 과거에 돈이 누적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해 가지고 이 엄청난 말하자면 부채를 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정부에서 그런 약속은 있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문서상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청에서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저보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기채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있으니까, 그러면 기채상환은 그 기채상환 기한이 도래해서 그때 그때 기채를 상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저희들이 그 이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약정을 할 때에 그거를 이자부담 기일이라든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저희들이 이자를 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여기는 본 도 상황이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여기에 72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간사 이기수

예, 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이자만입니다.

● 간사 이기수

이자만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간사 이기수

지금 저 송진하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거와 같이 저도 그런 기채에 대한 염려가 좀 됩니다.

우리가 그 먼저 명퇴시키기 위해서 기채도 했고 요번에 또 교실 증축하면서 또 기

채가 올라오고 했는데, 이 기채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때 기채할 필요가 생긴다면 기채를 하고 상환계획도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기채를 하고 적당한 기회에 상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기채를 하고 있는 건지, 현재 기채액이 얼마고 또 요번에 또 다시 추경해서 기채할 금액을 또 승인을 받아서 기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때 그때 아무 생각없이 값을 생각없이 기채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까지 기채액과 지금 또 기채하는 것과 앞으로 기채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언제 언제 얼마만큼 갚아 나가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채가 저희들이 엄격히 얘기해서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 것을,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우리 자체로 재원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상환할 걸로 보고 그 사업이 진행된 것이 사실상 아니고, 종전에 우리가 970억 8,000만원이나 지금 현재 얻는 327억의 기채의 재원이 국가의 어떤 사업 속에서 파생되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기채를 하다 보니 재원을 어느 재원으로 갚는다고 그 재원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실 기채를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상급 부서에서 그 돈을 상환을 해 주고 이자를 상환해 준다는 확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자

체로 그거를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환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제 결산 때마다 말씀하시는 예비비를 600억씩 이상 남기면서 왜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합시다만은 저희들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금상환을 하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준다고 하는 돈에 앞서서 우리가 상환을 다 했을 경우에 정말로 조금 저희들로서는 부담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7월 20일날 대통령께 보고한 그 기획과 같이 국가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국가의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기 때문에 상환기일을 언제 어떻게 갚는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이 어느 시점에서 오느냐, 그 시점이 상환시기로 봐야 될 걸로 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 번에 명퇴수당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체적인 상환계획까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3년 거치 2년 상환이다 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방채로 승인 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금 생각으로는 금년도 추경에 되면은 다 내려주고 나머지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되면은 그대로 내

려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기채를 한다고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통장에 돈이 없을 때 기채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채를 327억씩 세웠어도 사실상 기채할 만약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한다는 금액은 불과 10% 내외, 뭐 거기에 딸린 어떤 토지매입비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극히 적은 액수만은 있어야 될 겁니다.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완대로 간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환계획을 길게 잡을 것도 없이 아예 기채를 안하고 아니면 극소수만 했다가 바로 갚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327억 기채승인 하지만은 현재 예산 범위안에서 쓰고, 또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만 우리 충북교육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327억까지는 다 기채를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이기수

기채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별도 서면 계획이라든가, 또는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지도 아니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금 기채하라 한다든지 그때 그때 해 가지고서 이자까지도 물고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저 쪽에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금 설명을 더 드린다면은.....

● 간사 이기수

예, 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327억을 저희 기획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27억을 지금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얻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떠한 일정한 자금을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인제 여기서 지금 160억을 얻는다, 320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하는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327억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시점에 자금 여유를 보가며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327억을 다 기채를 하기 이전에 교육인적자원부 방침대로라면 돈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이 327억이 외형상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집행은 아마 327억까지 다 가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이게 지금 기채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제 어느 특색사업에 의해 가지고서 기채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비단 충북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 지방 교육청이 다 해당되는 문제니까, 이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이 지원된다고 하지만은 이 기채에 대한 그 관리문제, 장기적인 상환문제, 또 교육인적자

원부가 어떻게 이것이 바로 지원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서, 물론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금액인데 우리 지방교육재정으로서 부담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성있게 이걸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간사 이기수

두 번째, 지금 327억 기채하는 중에는 고등학교 40명을 학생 급당 인원을 35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교실 증축수, 교사의 증원수는 충북 전체 몇 명이나 되며,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이나 교사의 숫자가, 증가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 결국 설상가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준별 교육과정을 하기 때문에 교사도 더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실도 더 필요해야 되는데, 또 이게 40명에서 35명으로 급당 인원을 하향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교사의 증원 수요나 또는 교실의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양쪽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뭐 학생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우리가 인원을 하향조정하는데 서구의 선진국이나 또는 미국의 급당 학생수에 대한 것을 10개국 정도만 조사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 주요골자 중에서 주로 초·중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금 초·중학교 기본계획은 아직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지 지금 안된 단계에 있고, 고등학교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예산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학급이 증가되고 또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76억을 투자해서 교실을 상당히 인문중심으로 지어 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 지침에 의하면은 7차 교육과정도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도 계속 증축을 하고 또 이번에 학급 하향조정에 따른 교실도 계속 증축하라, 또 이번에 증축을 해서 분리되는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7차 교육과정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학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순수한 고등학교 교원만 늘으면 211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원은 전국에 1만 6,500명 정도가 느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211명이

와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현재 학급당 교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하는 수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원이 하달돼야만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그 교원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건데 저희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를 2003년부터, 즉 2년 후부터 35명으로 하향할 경우에 청주교육대학 출신들 가지고는 도저히 정원을 준다 하더라도 충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건의하고 직접 또 관계관을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 부교육감 회의때 또 두번에 걸쳐서 건의도 드렸고, 그래서 교원수급이나 교실을 짓는데는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요거에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다만 한가지 시기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갑작스럽게 신설 학교를 두 개를 짓다 보니까 벌써 복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가 이미 들어갔는데 나머지 두 개에는 지금 부지를 이제 겨우 물색해 본 단계인데 저희들이 2003년도 1학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다면 교실을 90개를 증축하고 7차 교육과정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는 신설학교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적어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금 OECD 국가가 35명으로 학급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를 비롯해서 우리 나라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 해서 35명 내지 48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가지고는 OECD 국가에서 상당히 뒤쳐지고 21C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기에는 상당히 교육여건이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 단안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학급당 평균수가 뭐 38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그런데 일본 32명, 프랑스 25명, 미국 23명, 영국 22명 그래가지고 거의 20명 내지 30명의 범위 내에서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40명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기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의를 좀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간사 이기수

글쎄,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고등학교가 1,257학급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현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학급당 인원이 보통 평균 38명으로 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원래 저희들이 정원을 줄 때는 40명으로 줍니다. 그리고 본선을 1학년때 입학 40명씩 해 놓더라고 그 동안 정원 외 입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학을 가고 이래 가지고 학교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달되는 경우가 좀 있을 뿐 아니라 중간에 이농현상 때문에 학생수가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은 뭐 한 30명 편성된 데도 있고 또 시내 같은 데는 아마 42,3명 편성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얼핏 보기에는 말입니다, 1,257학급에서 대개 1,100학급으로 는다고 그래도 5명 정도 는다면 학생이 이럴 적에 시내 여중학교에 35명이라고 해서 5명을 억지로 갖다 붙일 수는 없는 일이고 대개 도시지역에 인원이 많이 늘을 텐데 그럼 7,200명 이상 인원이 는다면 계산 35학급으로 는는걸 따진다면 200학급 이상으로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은 이제.....

● 간사 이기수

지금 말입니다, 농촌학교 우리가 1,257학급인데 농촌학교는 결국은 35명이 되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5명이라고 해 가지고 5명을 도시학생을 억지로 갖다가 35명으로 돼야 된다고 해 가지고 떼어다가 붙일 수도 없는 얘기고 도시학급에 보통 40

명이상 45명이라든지 어느 경우엔 55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인제 결국 따진다면 인원수가 1,100학급으로만 는다고 해도 농촌학교 뺀다고 해도 1,000학급 이상으로 본다면 곱해서 나눠 본다면 한 7,000으로 된다면 35로 나눈다면 200학급 이상이면 100학급의 소수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를 우리가 예산안이나 이런 게 되는 거지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지적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잘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이제 35명 하향조정 하는데는 실업학교는 현재 1학년만 적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업학교가 지금 공장에서 보통 수업을 하고 실험·실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업학교까지 과연 2,3학년까지를 현재 하향조정해서 편성할 경우에 교실을 상당히 많이 지어야 됩니다. 지금 200학급 이상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2년 후에는 실업학교 교실은 그냥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신입생부터 35명으로 받아들이고 인문학교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도 다 35명으로 2,3학년도 하되 실업학교는 빠지기 때문에 이게 112학급으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문·실업 비율이,

수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인문이 실업보다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실업학교 1학년들을 35명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정원 한 학급당 5명씩 정원이 늘어나고 그 남은 인원 만큼은 인문계 학교로 저희들이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112학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형님들의 그 요망사항은 인문계를 과거보다 좀 늘려서 한 65% 정도로 지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알다시피 청주상업고등학교가 지금 청주대성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기존학급 9학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저희들이 수용률이 당초에 인문학교가 55.6%에서 61.5%로 해서 과거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인문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실업학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다음에는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그 구성비라는게 있는데 총예산에 대한 그 항목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간사 이기수

아니 모든 예산이 이번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전체예산에 대한 비율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럼 이거는 총예산에 대한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의 비율이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지요, 지금 기존 예산 플러스 이번 추경이 들어간 그 비율.

● 간사 이기수

그러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총예산에 대한.

● 간사 이기수

총예산에 그 항목에 대한 비율이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이것을 지침에 의한 겁니까, 그때 그때 비율로 따지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금액에 따라 비율이 산정 됩니다. 비율이 먼저 산정된 게 아니고. 금액이 나오고 그 비율을 구성비로 냅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침이 없는 얘기고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얘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인건비, 그러면 우리 총 인건비가 호봉별로 인원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 간사 이기수

예, 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럼 인건비를 먼저 딱 떼어내 놓으면 거기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비 세우고, 학교운영비 세우고, 이렇게 죽 하다 보면은 총액이 나오고 또 재원 연초 계획이 나온 다음에 세입·세출이 건건이 되면은 그때 구성비를 내게 됩니다.

● 간사 이기수

나중에 최후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요거는.....

● 간사 이기수

그러니까 해마다 변동될 수 있는 얘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이나 학생연수나 교원연수비가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많이 시켜야 됩니다, 많이 시켜야 되고 또 학생들도 연수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교원들이 재교육이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매우 중요합니다.

커리큘럼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교원들이 재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부나 저희들이 상당히 교원들

연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 교원연수에 대한 경비가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교원연수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원들도 많은 재교육을 가고 싶어도 이제 소요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고 또 교원들이 1정을 따거나 상급자격을 따거나, 아니면 교장·교감 승진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원들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또 그 희망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지금 편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선에서 이제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합시다만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비는 국고로 되고,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려하시는 대로 교원연수 기회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번 잘 편성해 보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예, 해외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지금 해외연수는 영어과가 지금 미국의 치코대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수코스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인원을 추천에 의해서 가는 소수의 인원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 '98년도부터 IMF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교원들까지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 없어서 다소 저희들이 거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간사 이기수

많이 확대해서 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꼭 2분 모자라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쪽도 조금 피로하실 테고 질의하는 쪽도 좀 저기 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상일 위원님 차례인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금이 48억 1,000만원, 그 다음에 OECD 국가수준으로 학급당 35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둘, 중학교 셋을 이제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이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잘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 공사의 대체적인 스케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설계는 언제부터 해 가지고 언제 납품을 받아서 언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대충 언제까지 마치겠다, 하는 그런 거가 궁금하고, 두 번째, 공사를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벌려놨을 경우에 가뜰이나 부족한 우리 교육청에 기술직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거를 효과적으로 감리·감독할 수 있겠느냐, 업자들이 들으면은 저를 욕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업자들이 공사를 날림으로 하려고 뭐라도 덜 쓰려고 하는 게 아직도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눈만 돌아가면 뭐 제대로 공사를 안 한다고 하는 소리가 파다한데, 더구나 요전에도 건설업체가 난립을 해 가지고 공사 하나를 따기 위해서 한 건당 수백 명씩 온답니다. 그러면 따기 위해서 저가로 수주해 놓고 어떻게 든지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엉터리 공사를 하게 마련인데 가령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궁금

하고 또 한가지는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 가을에 교실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인제 9월인데 9월 되면은 조금 있으면 추워지고 할텐데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과연 성실한 시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급당 고등학교 학생 35명으로 맞추고 7차 교육과정 수준별 선택별 중심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사는 뭐 교실은 어렵게 어떻게 철야 작업을 해도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211명 정도 정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채용할 건지 언제 모집공고를 내서 언제 채용고시를 봐 가지고 언제 교육을 시켜서 배정을 할 건지, 그것을 우선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나 방대한 양을 단기일 내에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사 스케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고, 또 많은 공사장이 난립함으로써 감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다, 고등학교 신설에 따라서 특히 그 공기가 우려가 된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211명의 교원정원에 따른 채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사 스케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다른 거와 달리 기간을 너무나 단축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하면 예산 성립 전이라도 타 예산에 그 집행잔액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해서 9월 20일부터 공사에 착수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지만은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즉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공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7차 교육과정 때문에 교실을 짓는 학교에 주로 학생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9월 25일날 도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 일정을 열흘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당기는 등 행정 절차상에 당길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당기되,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학기에 맞춰서 공기는 부족하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정절차상으로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줄이고, 특히 예를 들으면 설계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사기간을 날씨에 따라서 다소 축소해서 정지시킨다든가 하고, 그래도 다소 지연돼서 3월 달에 개교가, 사용할 수 없어서 4월 달에나 5월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이 수용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우선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일반 특별교실 중에서 일반적으로 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 한 두 개 정도를 사용을 해서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별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난립에 의해서 부실공사를 상당히 우려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 감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계 직원들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지역교육청 직원까지를 합쳐서 전 인력을 가동해서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설감리단 활용을 적극 활용하고, 또 최대한 이 사업이 확정된 후에는 현장에서 거의 이제 방문을 해서 공사현장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고교시설 기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기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2004년으로 하느냐, 2003년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그럴 때 또 학교를 하나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3년으로 이제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복대고등학교는 기

존에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예산심의를 잘해 주셔서 진행이 착착 잘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두 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여기 있는 우리 기획관리과 장님이 또워낙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서 부지가 정지가 된 터를 우리가 확보를 하다보니 거기에서 공기는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9월 15일날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신설학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완성학급으로 시설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서는 완성학급의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되, 우선 2003학년도까지 1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시공을 해서 학생들을 받고, 다소 좀 현장이 어수선하지만은 2,3학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1학년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계획도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수 하향조정에 따른 학급증가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그 특별선생님들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채용계획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해 주시면서 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중학교 계획하고 고등학교 계획이 같이 통합이 돼서 중·고등학교 교원수급 계획으로, 교원들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관계기관하고 중·고등학교를 통합해서 교원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업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아직 전문이 시달되지 않았는데 전문이 시달되는 대로 곧바로 계획을 착수해서 2002학년도 3월 1일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기간을 단축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교육부로부터 정원이 시달되는 대로 이 세부일정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일 위원

하여튼 공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 심지어는 지난번에 어느 학교에 가 봤더니 업체가 시공 중에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아주 짧은 공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육청 자체로 얼마, 10%를 증액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10%를 증액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수의 규모, 도시와 농촌의 규모가 다를테니까, 좀 차등을 두어서 배분을 하는 것인지.

제가 자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충주에는 여성여중·고 두 개

학교가 쓸 수 있는 다목적 교실 하나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좀더 10%에 구애받지 말고 두 학교가, 또 학생수도 1,000명이 넘는 데가 두군데나 1,000명이 넘으니까, 그런 데 하고 학생수가 한 3,4백 명밖에 안 되는 학교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만 더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지원이 안 되면 다음에 3회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형과 농촌형, 또 학생이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 좀 차등배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에서 이제 특별교부금이 올 때에는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전국 수준에 맞춰서 초등·중등·고등학교에 따라서 학생수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한 그 사업물량이 정해지고, 그 사업물량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이 6억을 더 편성하지 아니한 사유는 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전에는 어떠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주면은 그것을 전액 저희들이 썼

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대경비나 이런 걸로 그걸 더 쓸 수가 있었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1,000만원 이상으로 남는 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라는 것은 엄격히는 반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정부를 상대로 한 그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은 보통 87.635정도의 낙찰률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 조금 남짓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가에서 준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좀 너무, 계획을 좀 변경해서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 우리 도로서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10% 정도 그 낙찰률을 감안을 해서 10% 정도를 넘다보니까 학생수를 감안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떠한 사업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규모가 크면 물론 강당도 크고, 교실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 저희들 관례대로는 사실상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교육부 사업승인이 나온 대로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 물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교육부에 협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미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다 사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양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하는 것도 행정형편상 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들이 또 어느 학교는 돈을 물려주

고, 어느 학교는 줄이기가 행정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많이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잠깐 제가 간추린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성여고는 큰 강당 같습니다.

청주고, 상당고나 이런 데와 규모가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학교별로 쓰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학교시설비 현황, 이것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경고등학교 하고 용암고등학교, 두 개 학교에 설계비가 2억 1,5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학교가 다.

그런데 청주교육청에 분평중학교 설계비는 4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말여, 그러면 어떻게 죽림중학교 하고 두 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용암고나 가경고는 2억 1,500인데, 뭐 학교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배가 넘는, 이거 어떻게 돼서 그런지 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설계비를 저희들이 산정하는 과정은 교실

이나 아니면은 그 부속시설을 짓는 사업의 규모의 몇 %를 설계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 몇 %를 보태서 시설비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학교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보다는 같은 학급이라도 조금 틀릴 겁니다, 아마.

● 이상일 위원

아니, 그런데 틀린다 하더라도 학교를 두 개 짓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죽림중 하고 분평중, 두 개를 합친 겁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물량은 하나라고 했던 말여? 그러면 죽림중도 2003년 설계비 1식, 그래가지고 물량 하나, 그래가지고 단가를 2억 한 2,000, 이래 났으면 내가 착오를 안 일으키는데 죽림중은 빈칸으로 놔뒀고, 분평중학교 하나면 물량 하나, 이래가지고 해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2개교가 합쳐진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두 개교를?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둘 다 2억 남짓한 거니까, 예, 알

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이거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 학예행사 지원에 “양성평등 청소년영상제 제작지원”, 그럼 이거 남녀평등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것인가 본데, 이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천여고 하고 충주정보산업고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80만원씩 지원이 된 예산입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제작이 완료되면 저희들도 한번 시청할 기회가 있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이게 또 교육부에서 20팀입니다, 전국에서. 그래 이제 20개 팀 중에서 저희는 두 개가 선정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다시 그 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입상이 되면은 나중에, 연극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증원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뭐 질의에 앞서서 요즘, 국장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사무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라 할까, 황당하다고 할까, 정말 주야가 모자라서 참 고생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동정이 갑니다.

마치 모 일간지의 사설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전시에 전쟁을 치르는 듯한 교육 행정이다, 이런 표현이 사설에서 나왔습니다.

또 본 위원도 평소 생각할 때 교육의 원리에 벗어나는, 이 교육의 행정이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제가 저희의 장님께서 여쭙봤습니다만은 정말 전국적으로 교육위원들이 이번에 추경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국가시책에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은 어차피 이제는 우리는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염려 걱정하시는 게 바로, 바로 이러한 날짜도 없는데다가 또 아직 준비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교실만 지어가지고 우리 교육수준을 OECD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 과연 갈 수 있는가. 우리 집행청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꼭 국장님 아니더라도 과장님, 또 담당관, 또 담당 계원도 좋습니다. 뭐 질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폭넓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계획안을 이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맨처음에는 총괄표 주요사업설명이나 시설별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것만 딱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저번에 회의도 그랬고 예산심의할 때도 주문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십시오. 이러한 것을 별도로 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데, 심지어 일주일 전에 배부되는 이러한 안에 이것이 제가 꼭 배부하는 저희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이후에 왔으니까, 저는 부탁을 안했으면 이러한 자료 구경없이 그냥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을 속기록에 올릴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어찌 이렇게 위원들 입장에서 의안제출을 좀 챙겨주시지 않는가,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공적으로 속기록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것, 이것은 꼭 좀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서에 보시면, 거기에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게 보시면은 제가 잘못 챙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제34조에 보시면, 교육감은 제

77조 및 영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 를 수립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본회의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 소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하고 금년도에 정기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러한 과정을 안 밟은 사업이 없느냐,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의안 보면은 또 있어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사문화 시켰어요, 조례를, 그러니까 동시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바쁜 기관도 아니고 솔직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8월달에 별로, 초에 한 번하고 그냥 저희들이 시간이 있었고 해서 어렵더라도, 또 어렵지 않더라도, 조례를 왜 만들어, 조례를 위반하고 의안심의를 하고 있는 본 위원이 얼마나 부끄러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같이 답변을 드릴까요? 세가지 다요.

● 조일환 위원

아니죠,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이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청에서 관리계획을 예산에 앞서 한달 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에 국가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일이 한달만큼 그렇게 여유를 주게 되면은 내년도 신학기에 학교를 설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전국에서 우리 도의회가 가장 늦게 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다른 시·도는, 6개 시·도가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기획관리과 직원들이 거의 밤 새우다시피 하고 교육부에 가서 며칠씩 밤새워 가며 만들었는데 이것이 기획과에서 한두 사람이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사업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설이 따르고, 그 시설이 따른 다음에 또 교원수급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특정한 그 담당 과장님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이제 여러 과에서 이제 일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번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먼저 말씀하신 그 교육여건개선이 너무 조급하게 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씀도 상당히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예산서안을 배부할 때에 시설계의 부속서류를 못냈느냐,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교실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90개 교실을 진다고 그러면 90개 교실을 금방 동시에 교실규모라든가 계단실이라든가 화장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느정도 기획관리과의 예산에 수급이 좋다, 90개 짓자, 그러면 그때부터 학교의 배

치도라든가 계단실을 지어야 되느냐, 화장실을 놓아야 되느냐의 판단하는 데에 저희들이 2일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한해서는 상당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조례에 돼 있는 기간을 제대로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 조일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자꾸만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예산 확보하기 전에 주요사업이나 학교시설이 결정이 돼야 되죠. 그거 없이 예산을 세우고 그거 없이 이 예산안을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행정계획이 앞서고 뒤에 집행이 따라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사업만큼은 예산하고 계획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 하더라도 예산 뒷받침 없는 예산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타 시·도 의결이 이미 끝났다, 그러면 우리 충북의 교육행정에 관한 수준을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올린

현안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했다든가, 지연을 시켰다든가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늦은 이유가, 늦은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일손도 모자라고 밤을 세워도 모자란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타시·도에 비해서 이것이 지금 추진상에 늦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 잘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유나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조금 이해하세요, 조금 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럴 시기가 없었다,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이 전쟁 치르듯이 했다, 그러면 신설교에 관한 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2003년도입니까,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은 언제 세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번에 같이 검토했습니다, 예산하고.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연간 계획서를 세우게 돼 있던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그럼 저희도 세운 게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부에서도 계획이 안 나온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보고 하라고.....

● 조일환 위원

아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다음에 이 관리 공기는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럼 다른 시·도에는 다 그럼 한 달 전에 냈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도는 벌써 통과됐는데 거기도 한달 전에 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상급기관에서 해 주는 대로 하는 것이지 조례에 아무리 있다고 해도 불가능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서 공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 조일환 위원

아니.....

● 위원장 이충원

가만히 계세요, 제 직권입니다.

저희가 의문사항을 질의를 하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건데, 적어도 외면상 서로 감정이 엇갈리는 듯한 오고가는 대답은 서로가 좀 삼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조일환 위원님.

● 조일환 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주의를 주세요.

● 위원장 이충원

아니, 제가 주의를 준 겁니다.

● 조일환 위원

위원에게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이런 불손한 태도로 이게 지금 심의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충원

글쎄 가만히 계세요. 한 걸로 이미, 주의를 준 걸로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돼 있느냐 이겁니다. 평소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급박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럼 국장님께서 우리 충북교육에서 예산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에 이 연간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그 연간계획서를 미리 위원에게 배포해 주면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 예측도 할 거고, 의안심의나 위원활동에 참고로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5명을 맞추는 거기에 대한 급박히 내려온 그 예산에 관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오해를 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래요, 저도,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이것은 마치 뭐라 하면은 저 사람 무슨 감정 있어 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공박을 하고 말ियो, 국장님이 어느

의회 가서, 국회의원에게 감사할 때 한번 교육감이 어떤 태도로 했습니까? “예,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저한테 그런 게 있으면은 개별로 주세요. 저는 이 위원회의 위신을, 공신을 위해서 제가 그걸 못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충원

질의와 답변을 좀 정중히 서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일환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는 말의 표현을 제가 조금 좀 과격하게 했거나 아니면 좀 그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조일환 위원

이것은 오늘 이것에 대한 것은 교육감에게 시정촉구를 공문으로 위원장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의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평소의 예산,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도 벌써 내년도에 인사를 어떻게 할 거다, 인사계획서가

나옵니다, 시설계획서 나옵니다.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느냐, 이러지 않아도 장학관이 어떻게 하고, 정규교사는 어떻게 교체하고, 전문직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그게 전부 다 소위... 연간계획 이미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이주원 국장께 그것을 하나 사본을 드렸어요. 어찌 충북교육이 무계획하게 이렇게 하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오해 없으시도록, 또 우리가 안 되면 내년도 우리 시설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지, 제가 여기서 뭣 때문에 이것을 제의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조금도 제가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거라도 지금 안 됐으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내가 조례를 살펴보니가 분명히 있고, 먼저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77조, 34조를 들으면서 지방재정법, 자 이런데 어찌 그래 우리보고 동시에 이걸 갖다 하라면, 평소에도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취하하면은 이것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살리면 이것은 무조건 해 줘야 되고, 이 뻔한 공정식 아녀, 너 해라 말야, 그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어요. 또 요청을 했고 시정 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조금도 오해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 때문에, 요 아까 지방재 얘기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볼게요. 기채의 약정이 있죠, 어떻게

기채를 하겠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것을 하나 좀 주시되,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은 어디를 하든간에 어저께, 그저께 인가 한빛일보에 김 모 기자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조흥은행 내에도 또 기업은행 이런 데서 예금제일을 다닙니다, 쟤일, 저도 사업을 하니까 저희 업장에도, 금융기관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돈 좀 써달라고. 몇 %요, 연 7% 정도, 연 7% 정도. 또 우리 김 모 기자가 쓴 것에 의하면 조흥은행은 6.78%인가, 6.68%인가. 그래서 이 기채의 이것이 우리가 벌써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린 게 상당히 오래돼요, 금년 초부터입니다. 이게 좀 내려갔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3백 몇십억, 천여 억원, 이게 한달에 만약에 0.1%만 예산을 줄였다면 얼마의 이익이 남는가, 얼마의 이익이 남는가. 어찌자고 지금도 7점 몇 %의 안을 올려야 되느냐, 어찌자고. 적어도 이것을 올리기 전에라도, 우리 단가입찰해서 예산 많이 절감했어요. 또 예산을 잘 운영을 해서 순 재정 이익만도 뭐 작년, 제작년 인가 신문에도 난 걸 보면 몇십억 단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재정을 잘 운영하는 본 도에서 어찌 기채를,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그래서 이 경쟁시대인데, 경쟁시대인데 단가입찰도 약정기준을 배포하고, 단가입찰처럼 하면

안되는 겁니까. 더구나 개인의 신용 가지고 금융기관에는 물어줄 때 적어도 10%의 결손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자의. 그런 위험부담을 하는 것도 6점 몇 %대가 나왔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100% 신용도 아닙니까, 100%. 제가 예산컨대 6.0%대에도 이것을 갖다 쓰시오, 하는 기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것만은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추진을 하시고 앞으로 사무감사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추진하는 상황을 저한테 주실 수 있을는지요, 주실 수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예, 정말 저는 가슴 아픕니다.

제가 집에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수십억이 왔다가요, 수십억. 그 다음에 이것을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같으면 우리 평잔액이 보통 한 500억 된다고 그러던가요? 어떻게, 재정담당 누구시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입니다.

평상 잔액이 정기에금을 포함해서 약 1,500에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에금 이런 거 말고 수시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게 얼마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정기에금을 빼놓고서 일반 보통예금 하는 것은 몇백억 됩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 5,6백억이라고 예산, 거의 맞습니까? 5,6백억 된다고 그러던데.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5,6백이 아니고 5억 내지 6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현금(청불) 일주일 이상 되면은 지금 현금에 4%의 금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정기에금을 했다가 필요하면 해지하더라도 보통예금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개인사업에서 1조원의 예산을 굴렀다, 수백억 절약됩니다. 저는 평잔액이라는 거, 아, 7점 몇 %를 하면서 정기이자가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같으면 아마 전체 준다 해도 5% 안 넘습니다. 그래 정기에금 해 놓고 뭐 제도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예산으로 쓰면은 국가에서 오는 것이 줄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평소에 평잔액이나, 평잔액이나 정기에금에 대한 소위 예산에 대한 그 예산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되,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절감한 금액, 작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절감하는 방안이 충북 나름대로의 특유한 기법이 있

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교실증축문제,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해서 위원회에서 계움을 피웠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이 예산이 돼 가지고 도의회 넘어가서 이것이 한다면은 상당한 기간에 앞으로 착공하는 데까지도 한달 가지고 모자라요. 그렇다고 설계를 어제 주면서 오늘 달릴 수도 없는 거고, 콘크리트가 어제 붓고 내일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건축 아닙니까.

일본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거기는 학교건물을 세우는 데는 관에서 공정을 진행을 시켜요, 관에서. 그래서 어, 다 됐어, 그 다음 공정 들어가, 이렇습니다. 또 일본의 그 지방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교실 내구연한을 35년으로 봐요, 35년. 그런데 제가 모 공고를 갔을 때는, 이 학교는 43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본관이 말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공정에 의해서 진 집이 30, 40년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방수가 제대로 되고, 이상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정말 감독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이 위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개

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국장님께서 타 시·도는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진전,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면 하셔야 되잖아, 하셔야지,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도 이것만은, 이것만은 규정이나 조례나 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5명 OECD 수준의 학급 증설 때문에 사립학교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저는 내년에 준공 연도를 당겨와 가지고 시공자에게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걸 물리고 부실한 건물을 준공하는 것 보다는 한두 달 늦더라도, 한두 달 늦더라도 정말 완벽한 교육시설에서 학급이 증설되는 게 좋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특별교실 보면 우리가 반당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등학교인 경우는 2.5실 됩니까? 그래서 공업학교같은 데라든지, 또는 일반계고등학교도 학급수하면은 임시로 음악실, 과학실, 뭐라도 임시 교실을, 집기면 되니까, 이러한 비상수단을 하더라도 건물만은 제대로 지으면 어떨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업학교같은 데 있죠, 실업학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 조일환 위원

이런 데는 아까 실업학교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30명 기준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우선순위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취업도 많이 나가고, 실습실에 가면 교실은 또 비죠, 그렇죠?

그래서 실고나 이런 실업학교 교실증축은 제가 교육을 뭐 교육을 차별화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51개 교실되면 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에 지원하는 인력을 우선 인문계 쪽으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학교 고등학교가 개교가 되면은, 개교가 되면은 저희들 교육청 관내에 학생수용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가.

그러면 지금 앞으로 더 짓지 않아도 이번만 해결하면 35명 학급이 거의 되겠는가, 예산이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년 동안 그 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현재 학생수의 변동 추

세로 보면은 고등학교가 지금 3개교가 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년 학생들을 분류해서 받아들이면은 학급의 증가 수에는 그렇게 염려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다소 증가가 되는 학교가 있겠고, 줄어드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이증으로 투자가 안되도록, 이증으로 투자가 안되도록.....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에서 아까 10% 절감액에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소위 반환한, 교육부에다가 도로 반환한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까지는 반환한 게 지난번 결산에서도 보셨지만은 한 50만원 미만입니다.

● 조일환 위원

50만원 미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현재까지의 지침은 그냥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침은. 그런데 지난 6월 달인가 7월에 나온 지침에 의하면은 협의가 1,000만원 이상은 교육부에다가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 뭐 협의를 하라는 것은 그냥 쓸 수... 왜 그러냐 하면 전용을 해서 적당한 곳에.....

아까도 10%를 해서 저는 의무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불용액이 생기면 그냥 반환하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왜 의심이 생기느냐 하면은 기획과에 우리 행정담당관님인가요, 행정담당관님, 우리 낙찰금액이 몇 % 선이죠, 저희들이?

● 행정담당 이흥무

87.745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0.2%의 프로테이지가 거기서 90%, 10%를 절감하고 특별교부금에서 이렇게 해서 반환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0.2%의 예산은 생기는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그럼 의무적으로 반환을 했다면은 반환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동안에,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이제 낙찰율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세 번이 한계이니까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다보면은 그 이하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그 잔액이 이제 이 금액이 보통 5억 내지 6억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자체 부대시설로 쓸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벌써 한 10%가 넘어가지고 한 5,000만원, 6,000만원 된다면 교육부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쓰라고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지금 약 한 88% 정도의 낙찰율을 최고 한도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럼 제가 질문한 것을 시간도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집행청 직원들이 일도 많고, 참 밤 새게 하는데 뭐 일만 자꾸만 해달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 2001학년도에 여기에 대한 조례 제5장 제34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처분 취득에 관한 거에 연도계획을 2002년도는 세워서, 세워서 연도 말 이전에, 이전에 교육위원회에도 한 부씩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말한 대로 연간계획서라도 이렇게 세워 주시면은, 아, 짐작은 한다이거죠, 그리고 되도록, 되도록이 아니라 앞으로는 필히 의안이 한데로, 이렇게 좀 제가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아까 김 과장님, 무슨 말씀하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하나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좀 늦게 돌려드린 이유는, 사항설명서가 인쇄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인쇄하면은 저희들이 매긴 페이지가 틀려집니다. 이 페이지가 주요사업 설명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나오는 대로 드리고자 이렇게 늦어졌고, 저희들이 예산 짜는 것은 이번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채의 규모라

든지 이런 것을 정식 공문을 받고 짜지를 못할 정도로 급하게 짚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알아봐서 그것을 토요일날 오후에 늦게 봐서 일요일날 작업을 해서 월요일날 인쇄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연간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학교 설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급당지표를 낮추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계획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나눠드린 비전 21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2004년까지 OECE 수준의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계획에 나와 있고, 2010년까지 자체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 도에 저희들이 훨씬 앞서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장기계획도 사실상 초·중은 이미 30명, 고등학교는 35명, 2004년까지 계획이 교육부는 고등학교 35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2010년까지 35명 세웠던 것이 이번에 교육부 지침에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리국장께서도 얘기 했듯이 사실상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교육부에서, 너희 학교 2개 지어라, 교실 몇 칸 지어라, 라는 허락이 떨어지고 그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올 수가 전혀 없었던 일이고, 타 도가 저희들보다 앞서가는 것은 타 도도 저희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똑같은 실정인데 타 도는 교육위원회를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 5일만에 완전히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빠른 거지, 저희보다 결코 며칠 더 빠른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27일날 이것을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의회 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전에 없던, 관례에 없이 도정질문을 뒤로 돌리면 서까지 저희들 예산을 먼저 심사를 해서 17일날 의결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동절기 공사 중지에 단 열흘도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흘이라도 앞당겨 달라고 사정을 해서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흠족하지 못하신 점이 있을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도 말씀하신 대로 미리 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고, 저희들 계획과는 동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급차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미 교육부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내지 않고서 채무를 얻기 쉽다 해서 빠뜨려 놓으면은 타 도는 이번에 이런 계획으로 전국에 1조 2,000억 정도의 지방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충북만 빠졌을 경우에 충북은 장차 계획을 추가로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돈을 못 따오면은 충북만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쪽에서 이번 예산심사를 너그럽게 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긴급조치한 거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또 과장님께서 비전 21이다, 그 계획서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34조에 있어요. 연간계획으로 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의결을. 그것은 보고고, 업무보고고,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죠, 의결을 안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러느냐, 지금과 같이 이런 얘기가 없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간계획을 아무래도 학교설립이라든가, 중요한 거, 그때 발생하는 것은 그때에 작은 것은 몰아서 다시 승인을 얻으면 되는 거고, 큰 줄거리, 장기계획, 중장기계획은 그 당해연도에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시설이고 예산이 안 나오니까? 그때에 이 하라, 저는 이 조례를 그렇게 압니다. 그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긴급한데 우리가 죽도록 하면 조 위원은 맨날 이러니, 그게 아니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끝으로 제가 이제 당부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말씀, 조금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5페이지, 비법정전입금 삭감내역이라고 있어요.

(관계관 석에서 “10페이지에 있습니

다.” 하고 말함)

10페이지에 있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10페이지 사항설명서에 있나요?

● 총무과장 신준우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과학실업교육과장입니다.

중앙에서 작년도에 그 단가가 1일 3,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원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겁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이것은 도비로 20%, 중앙에서 30%, 우리 교육청에서 30% 이렇게 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기숙사비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입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그런데 어느 교육기관에는 작년에도 특별교부금이 몇억, 금년에도 몇억, 이런 데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어디서, 우리 시체 말로 위에서 지원금이 떨어졌더라도 여기서 교육

감이 요청하는 형식 아닙니까, 형식은. 그래서 정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감당을 못하지만은 제가 정우택 의원이나 김종호 의원께 실례 말씀 불구하고 제가 드린 것이 그겁니다. 예산은 교육부에 무슨 예산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현장을 형평에 맞게 좀 해 주십시오, 많이 따 주시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항간에는 상당한 항변성이 있어요. 어디는 이빠서 더 주는 거냐, 무슨 교실 지어주는 게 아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몇억씩, 몇억씩. 그래서 이러한 특별교부금의 신청은 앞으로 상당히 형평성 유지나 이런 것을 해야지, 그 학교만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정말 위축되죠. 이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일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본 계획은 그래도 1년치 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이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연간 시설계획이나 인사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든가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서 지방체에 대해서는 가장 금리가 낮은 부분은 공개를 해서 기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실증

축문제를 우려하시면서 그 다소 수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교실의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좀 지어 주시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도 아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시·도 지원인력은 일률적으로 좀 조정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2001학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이나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꼭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특별교부금을 형평성 있게 좀 조정 신청해서 집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시설계획이나 인사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아웃라인이라도 좀 저희들이 작성이 될 수 있으면은 반드시 제출을 해 드리는데,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이게 부담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간계획을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채에 대해서 상당히 이자부담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이자율이 6%대 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과 함께, 입찰제도 기채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안하셨는데 이것이 사무감사 이전에 그 안을

좀 제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어느 기관에서 기채를 하나냐의 여부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자금이 필요할 그 적정 시기에 얼마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할 것인가는 여러 금융기관을 저희들이 통털어서 봐 가지고, 비록 우리와 금고계약이 안된 농협이라도 염려하시는 대로 가장 낮은 금융기관을 찾아서 계약을 할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제출 요청이 계셨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실증축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기간에 안전사고문제, 그 다음에 또 내구연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감리를 해서 보다 쾌적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ECD 수준의 35명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실 11개를 증축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보조금을 주어서 내년도 2002년 3월 1일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고의 지원인력을 인문학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그 형평성 문제는 과거부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마다 상당히 그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형평성 문제는 고려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만족한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참 여러 지역이 나뉘져 있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형평성 있는 특별교부금이 지원·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1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번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은 저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속개를 하고 끝나고 점심을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속개를 하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기수 위원

질의하실 게 많지 않으시면.....

● 위원장 이충원

저는 이제까지 한 것을 정리하는 입장에

서 하는데, 답변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한 것을 정리를 해 드리는 쪽이 강합니다.

● 이기수 위원

마치고 하시죠.

● 위원장 이충원

괜찮으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 이상일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마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어떠세요, 관계관들 참석해 주셨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은 제가 몇가지를 여쭙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채가 지금 320억 편성했는데, 67페이지 보면 거기 나옵니다, 지방채 조서에 대한 내용이.

우선 관련법을 살펴보면은 지방재정법 제 35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조일환 위원님이 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조항 때문에 별도 안건이 아닌 추경예산안으로 지방채 327억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하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33조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3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에 대한,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액의 금액, 채무의 상환 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67쪽 보면은요,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즉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을 지으려고 아까 농협에서 지금 7.9%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거기다 금융기관의 명을 표시를 안 해 줬더라면 이런 논란이 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그럴 수 없겠지만은 언제 갚는다는 계획, 몇 년에 걸쳐서 갚아야 한다든가, 원금과 이자는 각각 얼마씩 상환한다는 등의 대중 윤곽적인 것이라도 저희에게 쥐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빚 얻어 쓰는 거다,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중이라도, 확정하기가 어렵겠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 내라도 이것이 현금으로 원금을 내고 상환해 줄 지 모르니까 이것은 못했다,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제30조4에 보시면, 연차별 상환계획서 조서까지도 예산안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해 주셨어야 좀 좋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자꾸 여기서 논의가 되느냐 하면요, 교육정책마저도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갈팡질팡 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작년인가 정년퇴임 한다는 분 뭘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해 준다더니 우리 돈으로 다 이자 지금 60억인가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사실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은 얼마입니까, 1,298억원, 대략 무려 1,3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각자가 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관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봐 주세요. 11쪽 보시면요,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이것도 제가 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애긴데 예비비 전용에 관한 겁니다. 어떡세요, 예비비라는 게 애초에 만든 본예산 했을 때 3% 이상이죠, 3%? 몇 %입니까, 10%?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0.5%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0.5%, 이번 추경은 그 내용 자체가 정부 방침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느라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도 없고, 또 보니까 예비비도 23억 이상을 돌려서 시설비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말고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비비가 247억이 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라 돈도 돈입니다,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얻어다가 결국 이제까지 보면 이자는 갚아야 되는 이런 기현상, 웃지 못할 넌센스가 있습니다.

타 시·도가 전부 빌려 쓰는데 우리만 안 할 게 뭐 있느냐, 예비비 두고서 빌려쓰면

됐지 그럴 필요 뭐가 있느냐, 막무가내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좋지 않은 사람의 업자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어떤 돈이든지 쓰고보자, 하는 식밖에 되지 않나,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겠느냐, 뭐 그런 논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9월 말 남았는데 대부분 가을에 태풍이 오겠죠, 올 수 있겠죠, 예상하겠죠. 그런데 247억의 예비비를 한 서너달까지 예비비를 남겨두고 빚을 꼭 이렇게 400억 가까이 얻을 필요가 있는가, 조금 줄이더라도 지방채를 단 몇 푼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짜놓은 것을 어떻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요.

● 위원장 이충원

간단히 해 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기채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환방법, 뭐 상환기간,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국정감사에 이것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것이 어차피 국가정

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침을 주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에도 그런 걸 내지 말아라, 이것은 학교 학급당 지표로 내려오면서 들어가는 기채는 그냥 기채액만 내주고, 상환기일 이런 것은 차후에 우리가 꺾을 때, 정말로 우리가 꺾으게 될 때 그때 정하자, 아직은 낼 필요가 없으니까 내지 말자,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문제는 저희가 전액을 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2억 예산 중에 36억이 이미 전반기 께 왔고, 후반기 것은 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150억을 저희들도 는 지난 해에 인건비 잔액으로 상환을 한 바 있습니다. 타 도는 상환한 도가 솔직히 얘기해서 불과 다섯 손가락도 안 꼽힙니다.

충북만이 150억을 상환했는데, 물론, 인건비가 교육부의 논리로 따지면은 고봉자가 나가고 저봉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익이다,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교육재정이 그만큼 이득을 갖고 왔느냐 하는 것은 중앙통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따지기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양심껏 150억을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그 부분도 전국에서는 정말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숫자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도 교육부에서 줬습니다, 인센티브로. 저희 꺾은 거 얼마 해서 그 부

분은 앞으로 주겠다고 해서 줬는데, 여기에 예비비를 염려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2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갚는다 한들 1,200여 억원 중에 불과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돈도 없이는 도교육청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 하나를 세우는데 국고에서 주는 돈 말고도 자체자원이 대략 한 많개는 20억, 적게는 14억 정도의 자체자원이 또 투입이 되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0학급을 한다고 할 때 부지매입비가 3,500명밖에 안 나옵니다. 3,500명 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지어서 운동장이 나오지 않고, 축구장도 미니축구장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향후 학교를 금년도에 두 개를 포함해서 이미 학교를 짓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앞으로 질 것도 여섯, 일곱 개 학교가 필요하다면 7,80억 내지 100억은 금방 들어갑니다, 돈이.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향후 그런 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0억이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또 예비비를 당년도에 써라, 회계년동일의 원칙에 의해서 써라, 써라 하신다는 것도 사실상 예산의 경직성만 강조하시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불용액을 넘겨서 익년도에 또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고 하는 예산의 탄력성 쪽에서는 좀더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

서 그 부분을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년도 예산은 가능한이면 적절하게 써야지, 그것을 예비비를, 동 예산을 이월하면서까지 기채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사항설명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인데, 이 예산편성에 관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재산매각수입이 13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13억 한 6,000억 되는 것 같은데, 대개 재산매각대금은 수입이 발생된 지역교육청, 시·군에서 쓰게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재산매각입니다, 보니까. 혜원학교 하고 하나는 그 고등학교에... 29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지역청으로 일부 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하지 않고. 지원액수를 대충 살펴보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유난히 어떤 교육청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아도, 지역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어떤 거 얘기하시는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덕산초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충원

전체적으로 내가 토탈 내 보니까 자꾸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만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덕산초 부분은 교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는 담장인데, 담장 겸 교문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다시 만들어 주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게 전체적으로 내 보시면 어떤 교육청은 토탈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공작물 같은 것도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덕산초 하면 그 교문도 보상을 해 줄 때 다 그 값을 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 주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충주공고에 도로편입 보상내용입니다.

이 보상해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주로 지금 여기의 토지매각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에 편입 되거나 하는, 주로 그렇게 도시계획이

나.....

● 위원장 이충원

아니, 충주공고 거.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충주시청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충주시청, 미안하지만 국장님, 그 공고가 보셨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못 가 봤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못 가 보셨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위원장 이충원

그러니까 앞에 정문에서 도로가 몇 차선인지 이것은 모르실테니까, 저는 요새 돌아다녀 봅니다.

정문 앞이 4차선입니다, 이게. 4차선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회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대부분인 1,500 내지 1,700명 정도, 정확히 제가 재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보니까 1,500명 정도, 정문에서 보니까 1,500 내지 1,600백명 정도가 충주공고 토지로 땅값이 대충 제가 제머리로 계산해 봐도 20억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1,500명에서 1,600명, 들어간 거 말고 점유하고 있는 거,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 충주시에서 20년 가까이 보상을 안해 주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0년 이상 안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평소 토지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보셨는지, 왜 그런고 하면, 지들 땅을 우리가 쓰면 벼락같이 받아내려고 하면서 우리 땅은 왜 20년 가까이 20억 재산 정도를 한 푼도 보상을 안 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엄격히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과거 관례서부터, 아니면은 어떠한 신흥 도시계획에서부터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편입되거나, 아니면 과거부터 시청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일반 관사하고 교육부 관사가 분리되는 과정 이전부터 이제 점유되고 있거나, 이런 재산들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 사실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로 일반관사 하고 저희들 하고 그 이해관계가 틀려서 이제 시청에서 필요한 재산은 빨리 돌려달라, 그 대신 대타로 뭘 주겠다,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요구했지만 그쪽 예산사정에 의해서 또 못 주는 것도 있고, 특히 그것이 도로나 구교나 어차피.....

● 위원장 이충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한번 노력을 해 보셨나, 공문을 했다든지, 왜 그

러느냐 하면 당장 사람들 주도 않해요, 없어요. 그래도 한번 일단 서류를 낸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해 놔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얘기할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188명이죠? 관계관 참석하셨나요? 188명 정도 땅이 지금 얼마 보상금이 있는가 하면 1억 3,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800정도라고 하면 지금 보편은 아마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관서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점유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반대 현상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한번 그것이 상대기반이 예산이 편성돼서 매각, 또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재산매각대금 예산편성 내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보는 거고, 충주공고에 관한 거 시청에서 1억 3,700을 이번에 보상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함께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서면이라도 이것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과장님, 뭐.....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그 추진현황을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전체적으로 지금 타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재산을 파악을 해서 가지고 일단은 한번 추구를 해 보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우리가 남의 것 점유하고 있으면 벼락같이 달라고 그럴텐데 뭐.

그 다음에 역시 국장님한테 여쭙보는 건데 5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이번에 변호사 수임료를 증액을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공적으로 계류돼 있는 집행비가 얼마가 돼요?

지금 와서 그것을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현장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소송 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3년, 4년, 어떤 것은 단기간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변호사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당초에 우리가 착수

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이기면은 지금 여기 예산에 있듯이 착수금 외 사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것이 변호사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소송의 몇 건을 이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이긴 부분의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550만원을 넣고.....

● 위원장 이충원

가만있어 보세요. 저야 더 나가는 거 아니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승소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나갔다 이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런데 이것이 더 깊이 말씀드리면, 좀더 깊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학교육원 신축공사 할 때에 저희들이 대금지급 관계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졌고, 다시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이겨서 그 소송 사례금을 주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9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분들이 물으신 겁니다. 그래 종합적인 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강당 신축비 추경에 관한 겁니다.

94페이지요, 청주·제천교육청 관내 학교 강당신축에 대한 건데 청주관내 학교는 청주 남중이고,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아뇨 그 94페이지에 있는 다목적 교실은 서운중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글쎄요, 그 다음에 119쪽 하고 두 개 연관이 되는 겁니다, 119쪽,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동명초등학교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제천지역 학교는 동명초등학교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제128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처음 일부가 확보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잘못 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일선학교에서 볼 수 있는 강당 정도라면 대개 10억에서 12억, 이래야 제대로 됩니다, 저거.

좀 나은 시설을 하게 되면 10억 정도 든다고 요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에 애당초에는 청주 남중이 12억 정도, 그렇죠? 동명초가 9억 정도 넘게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가.

아마도 그 두군데 교육청이 지금쯤 설계 용역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지금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건축비를 도대체 얼마를 잡고서 설계주문을 했는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 우리 보조금, 특별금 관련 지침이 변경돼서 이것도 그 맥락의 하나인데, 당초에 교육부에서 시달된 금액만 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을 포함 안 시키는 것으로 했다가 보조금관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 10% 정도를 더 넣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다목적 강당을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학부형님들도 그렇고 지을 때마다 모처럼만에 한번 짓는 거니까 좀 넓게 짓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당에 또 투자를 질 때 마다 가산을 하다보면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방침은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해서 10%를 더 얹어서 이제

국고를 반납하지 않고 알차게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만 설계비는 이것이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령 당초 예산으로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10% 가산된 금액으로 비율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래서 6,800만원씩 똑같이 준 거죠, 양쪽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일반 시설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는 같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우리가 보통 물어봐도요 6,500 정도의 강당을 못 짓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플러스죠, 그러니까 먼저 있던 금액에 6억 5,000에다가 플러스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충원

지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1회 추경 심의할 때에 관리국장 답변이 “강당같은 시설은 권장사항이니까, 저희가 의혹을 받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국고 내려온 만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지방비는 안 보태주는 걸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잘못 알았는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것은 원칙론일 수 있습니다, 제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사과말씀을 드렸죠,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조금관련 규정이 교육부하고 전부 1,000만원 이상을 전부 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변경돼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충원

지금까지 보면은 대개는 아주 어렵게 어렵게 지방비를 보태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지신 것은 번듯하게 잘 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거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타의 구체적인 것은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하나의 주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을 재촉구 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실 거 없으시죠?

● 김광수 위원

예, 제가 한마디.....

● 위원장 이충원

예

● 김광수 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립 학교 자립형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충북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적립금을 기준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15%의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고 현재 또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 중에서 신청을 할 경우 교육감이 다시 검토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인정을 하되, 학생선발권이나 교과과정 편성권을 학교에 되 돌려 주겠다, 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들의 학교법인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현재 법정 부담금을 100% 부담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3배 이상 납부할 수 있는, 그 전입금을 부담할 법인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저희들한테 신청된 법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설해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부담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학

교법인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이충원

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체적으로 봐 가지고 거의 장장 3 시간을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서 추경예산을 손질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휴회를 할까요,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할까요, 어떻게 어요?

● 조일환 위원

이것은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최종.....

● 위원장 이충원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어서 이것을 끝내고 점심을 잡수실 건가, 그렇지 않으면.....

● 조일환 위원

글쎄요, 계수조정이 그렇게 바로 끝나겠어요? 지금 12시 40분인데.

● 위원장 이충원

어떠세요, 위원님들?

● 간사 이기수

10분간 휴회를 해서 계수조정이 가능하면 다시 속개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한 10분

간의 계수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이제 휴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집행청에서 오신 여러 관계관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점심시간이 벌써 지나고 했는데, 제 운영이 잘못돼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지연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그 뒤에 속개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점심 후에 재차 속개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테니 그저 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따가 마지막에 이 자리를 내려갈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또 여기 집행청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실는지 안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의 입장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흑여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조금 정중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다만 우리 사람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중히 대답하는 건데 제 삼자가 듣기에 조금 감정이 어린 게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거부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점을 앞으로 서로가 좀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축구를 제가 합니다.

뭐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좌석

에서 사적인 감정 비슷하게 서로 얽히면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를 본 제 불찰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2분 정회)

(12시 52분 속개)

● 위원장 이충원

속개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10분간 논의한 결과 좀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겠다 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점심이 끝난 뒤에 2시 반에 이 자리에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이충원

예정 시간보다는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리된 것 같은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예산 각각 9,256억 7,563만 4,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직접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단히 애를 쓰신 집행청의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계수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실무자 관계관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청에서 혹여 무슨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끝으로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특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서 충실치 못한 답변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조일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인이 평소와 같이 목소리가 다소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좀 높게 표현이 돼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상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소위원회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역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격상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우리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끔적이면 공적인 것으로 끝나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내외 간에도 서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갈 수 있는데 끝나면 그만인 것 같고,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충청북도 교육발전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견은 공적인 의견으로써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언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 반목같은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북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저 좋은 의미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가 끝나면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어떤 일

[제131회-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빌어마지 않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 고맙습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상일, 조일환.

○ 출석공무원 : 8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별첨 1)

※ 별 책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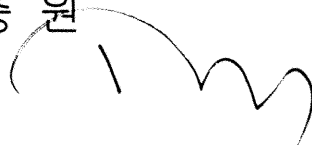
-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본회의(별책 1)
-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본회의(별책 2)
- ▶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본회의(별책 3)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9. .

위원장

이충원



(별첨 1)

제131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

○기간 : 2001. 8. 29(수), 8. 31(금) / 2일간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2001. 8. 29.(수) ● 12:00~ | ○ <u>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u> - 위원장선출의건 - 간사선출의건 - 의사일정결정의건 | |
| 2001. 8. 30.(목) ● 11:00~ | ○ 현장방문 | |
| 2001. 8. 31.(금) ● 10:00~ | ○ <u>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u>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 * 산 회 * | |

